



2021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2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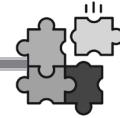




“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절세방법은 바로 성실납세 입니다.”

목차

CONTENTS



I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안내

5

1.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6
2.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25
3. 주요 세법 개정내용	40

II

전자신고·납부 요령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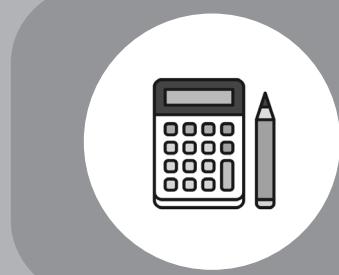
1. 전자신고 요령	70		
■ 흠택스 / 70	■ 모바일 / 92	■ 보이는 ARS 신고 방법 / 97	
2. 전자납부 요령	98		
■ 흠택스 / 98	■ 신용카드 / 102	■ 모바일 / 106	■ 수동납부서 / 107

III

자주 찾는 문답사례

111

1.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문의	112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128
3. 전자신고 관련 문의	133
4. 전자납부 관련 문의	147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안내

1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가. 부가가치세 개요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text{부가가치세} = \text{매출세액} - \text{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기간

1) 계속사업자의 경우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 또는 조기환급 발생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과세기간	신고·납부기간
1.1~12.31.	다음해 1.1~1.25.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 (예시) 일반과세자가 202*. 5. 13. 폐업한 경우
 - 과세기간 : 202*. 1. 1.~ 202*. 5. 13.
 - 신고·납부기한 : 202*. 6. 25.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 부가가치세 세액 계산 흐름

1) 일반과세자

매출세액

$$가 = (1) + (2) + (3) \pm (4)$$

(1) 과세분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2) 영세율(수출) 세금계산서 교부분 + 기타 매출분

(3) 예정신고 누락분

(4) 대손세액 가감

매입세액

$$나 = (5) + (6) + (7) - (8)$$

(5)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분 - 수출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분 + 고정자산 매입분

(6) 예정신고 누락분

(7)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의제매입세액 +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재고매입세액 + 변제대손세액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8)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다 = 가 - 나$$

경감·공제세액

$$라 = (9) + (10) + (11)$$

(9)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공제 등

(10)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대리납부 세액공제

(11)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세액 '20.1기, '20.2기에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마

예정고지세액

바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사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아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자

가산세액

차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자 + 차

2)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가 = (1) + (2) + (3)

(1) 과세분 $\text{매출금액} \times \text{업종별 부가가치율} \times \text{세율}(10/100)$

(2) 영세율 적용분

(3) 재고납부세액

공제세액

나 = (4) + (5) + (6) + (7) + (8)

(4)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 공제
 ('21.7.1.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매입액(공급대가) \times 0.5%

(5) 의제매입세액공제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 \times 공제율
 * 음식업 8/108 또는 9/109, 과세유통장소 2/102
 제조업 6/106
 ('21.7.1.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적용 배제

(6)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액공제

(7) 전자신고 세액공제

(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다

예정고지(신고) 세액

라

가산세액

마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

가 - 나 - 다 - 라 + 마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전)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속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태서비스업	30%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 종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 밖의 서비스업	30%

마.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는 해당업종 및 공제사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서식을 다운받아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사업자구분	제출대상 서류
일반과세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p>[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대손세액공제신고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전산작성분 첨부가능)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 시) 건물관리명세서 (부동산 관리업)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 현금매출명세서 (전문직, 예식장, 부동산중개업, 보건업 등)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동물 진료용역 제공 시) 사업양도 신고서(사업 양도 시)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하는 경우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건물, 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간이과세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p>[아래 항목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영세율 첨부서류 (영세율 해당자)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부동산임대 시)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 기타 서비스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유형별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 현금매출명세서
◦ 동물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동물 진료용역 매출명세서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 영세율 매출명세서 ◦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 영세율 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	◦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있는 경우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및 계산근거
◦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수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전자화폐 결제명세서
◦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
◦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	◦ 건물관리명세서
◦ 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경우	◦ 사업장현황명세서
◦ 건물·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의제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 재활용폐자원 및 종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
◦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 사업양도신고서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경우	◦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 사업자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 면세 매입이 있는 경우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환급 신고 등 그 밖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첨부 서류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집행기준(56-101-1)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수출실적 명세서, 휴대반출시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대행수출 : 수출대행계약서 사본과 수출실적명세서	
중계무역방식 수출, 위탁판매 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기공무역 수출, 수입신고 수리 전 보세구역에서 외국 반출 등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위탁기공무역방식 수출자로부터 매입하여 외국인도수출하는 경우 매입계약서 추가 첨부)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전자무역기반 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관세환급금 등 명세서(내국신용장 불포함분)	
한국국제협력단에 재화 공급	한국국제협력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재화 공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대한적십자사에 재화 공급	대한적십자사 발행 공급사실 증명서류		
수탁기공무역 수출용 재화공급	수출재화 입증서류 및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최초 신고 시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을 제출하고 당해 신고기간에는 외화획득명세서 제출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공급가액일람표』 (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한 공급가액 포함 작성)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다른 외항사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선(탑승)권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 체결 대가	외화입금증명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의 송장집계표 또는 대금청구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 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외화획득명세서에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입증 서류[화주가 내국인인 경우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 임을 입증하는 서류(B/L)]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및 일부 용역	·외화입금증명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외환매입증명서 또는 외국환매각증명은 외화입금증명 서에 같음 직접 외화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사실 증빙 첨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납품사실증명서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사본이나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 (전자무역기반 시설을 통하여 개설되거나 발급된 경우)	
외항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재화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행 선(기)용품 등 적재허가서
	하역 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에게 제 출한 수출입물품 적재·하선(기)작업 확인 신청 및 증명원 또는 대금청구서
	기타 용역	선(기)적원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은 용역공급기록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연세의 경우에는 유류공급명세서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급 승선 신고서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원양어선에 공급 하는 재화·용역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세관장 발급 승선 수리신고서 또는 선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나 대금청구서
	지정서류를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재화·용역일람표와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대금청구서

영세율 적용 대상	첨부서류	
	법령에 의한 첨부서류	국세청장 지정서류, 집행기준(56-101-1)
외교공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상시 주둔 국제연합군 또는 미군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법24 ①에 따른 해당 외교공관 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력 등 계속 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기록표 또는 용역공급기록표	재화·용역 공급기록표
관광일선용역	일반여행업은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 관광일선수수료 명세표와 외화매입증명서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외교관면세판매 기록표	외국인 물품판매·외교관면세 판매 기록표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위 지정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획득명세서 ·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
영세율 대상이 되는 제조·가공·역무의 제공이 2과세기간 이상 소요되어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제조·가공·역무제공계약서 사본
방위산업물자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납품증명서	
도시철도 건설용역	납품받는 기관장 발행 용역공급사실 증명서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공급 입증서류	
장애인용 보장구 및 정보통신기기	월별판매액합계표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월별판매액합계표, 임협·중앙회의 장의 임업용 기자재 구매확인서 ·농협 등을 통한 공급의 경우 기관장의 납품 확인서	
농·어업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	환급신청서, 농·어민 확인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비사업자는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환급신청명세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장이 확인한 판매확인서와 송금명세서 또는 환급증명서 ·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의료용역공급확인서 및 환급·송금명세서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외교관면세판매기록표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외국사업자 종영원,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원본, 위임장(대리인에 의한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이용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면세점 공급실적명세서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공급실적명세서	

바.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전자신고

○ 전자신고 도입 취지 및 혜택

-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전자신고를 이용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결제내역(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자)·예정고지금액 조회 등 다양한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직접 신고하는 경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 방법 (구체적인 요령은 '전자신고·납부 요령'편 참조)

-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 * 회원 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 가능
 -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 세무서 방문 시 준비서류(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 전자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 사항이 발생할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최종 전송한 내용이 반영됩니다.
-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PC)에서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고 하단의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거나
- 모바일홈택스 앱(국세청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무실적신고」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변환방식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한 신고서 작성방법)

- 세무회계 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자료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파일변환신고(회계프로그램)」 메뉴에서 변환하여 전송하면 됩니다.

* (설명서) 홈택스 하단 「자료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설명서

○ 전자신고 이용시간

- 202*7.1.부터 7.25.까지 ⇒ 06:00 ~ 다음날 새벽 01:00
 202*7.26.(신고마감일) ⇒ 06:00 ~ 24:00
-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전자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면신고 (우편 또는 직접 세무서 방문)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 신고서 작성요령은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 부가가치세 납부 (구체적인 납부요령은 98쪽 참조)

1) 홈택스 전자납부

○ 이용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국세납부’ 선택(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필요)

구 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납부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구분 (1. 확정분자납), 세목 (41. 부가가치세)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클릭한 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하면 결제수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 선택·입력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국세 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이용시간 : 07:00 ~ 23:30

2) 인터넷·ARS·ATM 납부

※ 납부서를 준비합니다.

○ 인터넷 납부

- 거래은행 사이트 접속 ⇒ 인터넷뱅킹 국세납부 배너 선택 ⇒ 본인 확인 절차 ⇒ 잔고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국세납부신청 확인서 발급

○ ARS 납부

- 거래은행에 전화를 한 후 ‘국세납부’ 선택 (이하 인터넷과 동일)

○ ATM 납부

-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 이용시간 :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가 발생

3) 신용카드 납부

- 모든 국세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카드로 납부 시 납부대행수수료(신용카드 : 0.8%, 체크카드 0.5%)가 발생
-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http://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한 후 카드결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국세 ⇒ 조회납부 ⇒ 납부할 건 선택 ⇒ 카드정보 입력 ⇒ 납부하기 ⇒ 공동 인증서 확인 ⇒ 납부결과 조회 ⇒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이용시간 : 매일 00:30 ~ 23:30
 -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4) 모바일 납부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 접속,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납부’ ⇒ ‘국세 납부’ 선택

구 분	방 법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선택 후 조회·납부
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세목 (41.부가가치세)
세무대리인 등 타인 납부하는 경우	‘타인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한 후 계좌 정보 입력
- ‘납부내역’ 또는 ‘타인세금 납부결과’에서 납부결과를 확인
-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미리 등록한 페이코, 앱카드* 등을 이용하여 카드 번호·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 가능
 - * (서비스 제공업체)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및 6개 카드사 (국민·삼성·신한·현대·NH농협·롯데)
- 이용시간 : 07:00 ~ 23:30



5)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 공동인증서로 은행사이트 접속(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 이체 → 당/타행 이체·입금은행에 국세 또는 은행 선택, 입금계좌 정보에 고지서·납부서의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입력 후 이체
- 국세계좌는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 중앙회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
- 가상계좌는 5개 은행(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에서 제공하며, 가상계좌 개설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가상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체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용시간 :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각 은행에 따라 인터넷 뱅킹의 공과금/국세 등 경로와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6)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

- 전자신고의 경우 신고/납부(부가가치세, Step 2.신고내역)화면에서 출력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 서면신고의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http://hometax.go.kr>)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에서 납부내역을 입력한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이체하시면 됩니다.

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 신청은 신고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 ⑦ 「세무사법」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 ⑨ ①, ②, 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자. 부가가치세의 환급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당해 예금계좌로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 다만,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세율, 시설투자 등에 따른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되며, 그 밖의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됩니다.



차. 기한 후 신고

- 사업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한 결정·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고는 전자신고를 하시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50% 감면되니 조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카.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불이익

1) 가산세

가산세명	가산세액 계산
무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 무신고납부세액×40% or 일반 무신고납부세액×20%
과세신고· 초과환급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40% +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10%
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이자율(1일 25/100,000)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0.5%
미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명의위장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가액×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세금계산서발급 및 전송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2% 종이세금계산서 발급가산세 : 공급가액×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0.5%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 공급가액×1%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계산서등 가공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3% 세금계산서등 위장 발급(수취)가산세 : 공급가액×2% 세금계산서등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가산세 : 과다기재 공급가액×2%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산세 : 공급가액×3%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정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제출·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0.5% 지연제출(예정분→ 확정분) : 공급가액×0.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계산서의 지연수취 : 공급가액×0.5% 미제출(경정 공제분)·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과다기재 : 공급가액×0.5%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제출 또는 과소기재 수입금액×1%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②③1·3·5호)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부가법§60⑥),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0.5%)가 적용됨



2)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 납세자가 과세기간별로 세무서에 제출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제출서류는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구축된 신고자료를 과세인프라 자료(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자료 등), 외부기관 수집자료, 현장정보 등과 비교·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를 선정 합니다.
- 신고내용 확인에 불응하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가.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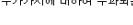
1) 흠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예시)

<납세자용>

□ (경로1)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신고도움서비스

부가가치세 신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따라하기
 부가가치세 챗봇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전자신고
지주하는 질문
전자신고 작성방법
(첨부서류별)
전자신고 이용방법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조기환급신고
(궐별)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작전기와 계약등일)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등)
정기신고
(문답형신고)

□ (경로2)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부가가치세신고도움서비스

<h2>조회/발급</h2> <p>세금의 신고/납부, 과세자료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 서비스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내용의 조회는 관할세무서의 자료처리와 서면으로부터의 전신 입력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 납부내용의 조회는 최근 5년 이내의 납부내용으로은 원형 납부 및 기타 모든 방법으로 납부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3>전자(세금)계산서</h3> <p>전자(세금)계산서 > MVL일본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 · 목록조회 · 합계조회 및 통계조회 · 사용자유형별 조회관련 관리 · 주민번호 조회수분류 및 학년조회 · 발급증정서/예정특례증정조회 · 거래처 및 품목관리 · 매입발송증정조회 및 재발송 · 신증신용증명서 신청 · 제3자 발급 사설 조회 	<h3>연말정산</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간소화 <h3>편리한 연말정산</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로가기 	<h3>세무대리정보</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세무대리수임등의 · 나의신고대리수임등의 · 나의세무대리인조회 · 발급된 증명장보 · 나의세무대리인 해임 · 신고대리 정보이의 조회
<h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등 기증시가 조회 · 승용차 가액조회 · 현지점수장구조회 	<h3>알려드립니다.</h3> <p>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거래사기나 속임수를 막을 때마다 날 10일마다 발급 해야 (예) 2019년 8월 10일에는 전액입니다. 발급 및 전송한 날짜확인</p>	<h3>세금 신고 납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신고증명서 서비스 ·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 부기기자세세금납부특례조회 · 부기기자세세금납부증명서 서비스 · 부기기자세세금납부증명서 서비스 · 부기기자세세금납부증명서 서비스 · 수출증명서별로 조회 · 증여 및 결정정보 조회 · 주택세금 100만 원(2018) · 상속증여세 신고 증명하기 · 전자신고결과조회 · 발급된 신고증명서 서비스 · 법인·상인·법인·간이 세액조회 · 신용등급·매출자료 조회 · 현지점수고액증명서 조회 · 납부내역 조회 · 단인세금 납부결과 조회 	<h3>기타 조회</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유형별정환 · 사업증정세금신고현황 · 주류면허상세 · 기관 단순 경비비율(업종코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종교인·소득간이세액표 · 불복청구현황상황 · 불복청구수정증명자료 · 과세자료도록 · 지급보증·정상기각 조회 · 환급금 상세조회 · 납세관련인·위탁자 조회 · 서면(분당, 우편등) 접수현황조회 · 전통시장 정보 조회 · 소기업·취약계층 소득·감면 명세서 조회(원천징수의무자)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
<h3>세금포인트</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포인트 조회 · 세금포인트 혜택 · 세금포인트 팁인 쇼핑몰 	<h3>현금영수증</h3> <p>현금영수증조회 현금영수증 수정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사업용증정카드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납세관련인 조회 서비스 현금영수증 인터넷 발급 안내 현금영수증 발급</p>	<h3>사업자상태</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h3>연부연납</h3>
<h3>국세 환급금 찾기</h3>			
<h3>전자고지 열람</h3>			

〈세무대리인용〉

□ 세무대리인→수임납세자(신고대리)정보조회→부가가치세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 세무대리 수입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4 기타 조회

기장수임 서비스

세무대리

수입납세자 등록

수입납세자 정정

수입납세자 해지

수입납세자 조회

신고대리 서비스

신고대리 납세자 등록

신고대리 납세자 해지

신고대리 납세자 조회

수입납세자 정보조회

-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 사업증정과 신고현황 조회
- 고지내역 조회
- 체납내역 조회
- 환급금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조회
- 사업증신용카드누계 조회
- 화물운전복지카드누계조회
- 종합소득세신고관련자료조회
-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 현지기업고유번호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사업장광고신고 안내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통례 조회
- 납부서 출력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신고대리 정보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 신용카드 매출자료조회
-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조회
- 사업증신용카드누계 조회
- 화물운전복지카드누계조회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 조회
- 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료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 증여세결정내역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통례 조회

〈내부직원용〉

□ 대내포털→신고/결의→신고안내→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신고도움서비스

[CA30]부가가치세신고5X

신고/결의 > 신고안내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신고도움서비스조회 ▾

부가가치세신고도움서비스조회 [CA30]

유관업무이동 ▾

화면Clear

※ 과세기간(년/기) 년 선택 기
 ※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구분 선택

조회(F2)

1. 기본사항

신고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명)
업태	종목

2.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자료

안내사항	안내내용
------	------

3. 신고 참고사항

〈 흠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화면(예시) 〉

○ 개별분석자료 TAP

부가가치세 성실 신고를 도와 드리는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 아래 자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료로, 이를 참고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하기

★ 과세기간(년/기) 2021년 1기 ▼ ★ 신고구분 ○ 예정 ○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101-22-34567 ★ 조회하기

© 2018, LLC. All rights reserved. www.english-test.net

그 밖의 금융제작업금 액(①)	제작금액 합계(②)	그 밖의 금융제작업 액/제작금액(①/②)
13,948	47,255	29%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

안내사항	안내내용
(업종별 신고 시 유의사항)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금 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이를 신고 누락 예) ○ 소송 불복 성기보수, 신고대행 수수료, 검인비 등 소액 수수료, 설계·디자인 보수 ○ 실제 매출이 발생했으나 대금을 수령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신고 누락 ○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 후 신고 누락 ○ 접대 목적으로 골프회원권 등을 매입하고 매입세액을 잘못 과세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가사용 비품구입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직전기 매출 및 매입 구성 분석

▶ 직전기 개인 매출 및 매입 구성분석

(단위: 천원, %)

▶ 직전기 업종별 매출 및 매입 구성분석(주업종기준)

(단위: %)

구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기타(정규 증빙 의)	영세율	합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의제매입	재활용폐자원	합계
	34.4	13.1	23.6	28.9	100	34.3	39.0	9.7	17.0	100
구성비율	34.4	13.1	23.6	28.9		34.3	39.0	9.7	17.0	

* 상기 매출 및 매입 구성비에는 예정신고 누락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기본사항 TAP

* 과세기간(년/기) 2021년 1기 * 선고구분 ○ 예정 ○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101-22-34567 조회하기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주요판례

● 기본사항

신고안내 자료에 대한 문의	종로 세무서 소득세과 유파황 조사관 (☎ 0000-0000-0000)		
상호(법인명)	태스'트(주)(상호)	성명(대표자)	(태스트개인5)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 목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확인할 내용	
■ 기본	전자세금계산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발행분 확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 확인
	(현금매출) 계좌이체, 민테크 결제 등으로 받은 결제대금 확인
	(영세매출) 수출통관내역, 내국선 품강 및 구매확인서 관련 매출 확인
	(첨부서류)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세를 적용 위한 필수서류 준비
	(결제) 과 면세 결업사업자 과세매출 작성 확인
	(세금계산서) 면세·간이·폐업 사업자로부터 매입액은 공제 제외
	(신용카드) 사업 무관·개인적 사용, 접대비 목적 사용액은 공제 제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임차 목적 매입액은 공제 제외
	(중복공제 걸림) 매일세금계산서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한 경우
■ 업무	(결제) 과 면세 결업사업자 종통매입세액 인증 적용 확인
	(공제 조과) 높·죽·임 수신을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초과 여부 확인
	(매입처 확인)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폐자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연전송(0.5%) 확인
	(공제 한도) 신용카드발행세액 연간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배제) 법인 및 직전연도 총급가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간이과세자 세액공제율 조정)
	(간이과세자 세액공제율 조정)
	(간이과세자 세액공제율 조정)
■ 기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연전송(0.5%) 확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미전송(1%), 지연전송(0.5%) 확인)

○ 세법개정내용 TAP

* 과세기간(년/기) 2021년 1기 * 선고구분 ○ 예정 ○ 확정 * 사업자등록번호 101-22-34567 조회하기

개별분석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주요판례

● 2021년 주요 세법령 개정사항

구 분	개정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증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종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증금액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작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가 공제받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매입세액공제 대상	간이과세자 중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율 조정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1.0%('21.12.31까지 1.3%)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규정 보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추가,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0.5%로 인하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신경방식 변경	세금계산서들을 발급받은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납부제역 신고사유 확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신고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간이과세자 확정신고 제출서류 추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명확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거주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한국설도공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설도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추가	민간투자법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연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건설용역)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 추징사유 보완	제회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세금계산서 발급
소규모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신설	작전기(6개월) 공급가액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과거 신고내용분석 TAP

• 과세기간(년/기) 2021 년 1기
• 신고분 예정 확정 사업자등록번호 502-05-88851
조회하기

개별 분석 자료
기본사항
과거신고내용분석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주요판례

○ 과거 신고내역 분석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단위: 백만원, %)

부가율 추이



기준	2020년 2기	2020년 1기	2019년 2기	2019년 1기
매출액	9	12	23	20
매입액	(0)	(0)	(0)	(0)
부가율	48.6%	53.5%	67.4%	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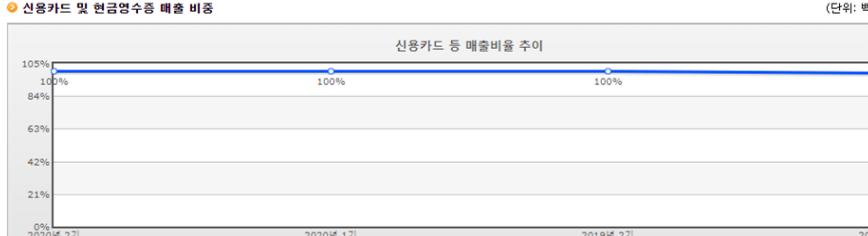
연세매출 신고 비중



기준	2020년 2기	2020년 1기	2019년 2기	2019년 1기
연세매출금액	9	12	23	20
연세수입금액	4	2	3	5
연세매출비율	32.0%	16.7%	14.0%	21.3%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단위: 백만원, %)



기준	2020년 2기	2020년 1기	2019년 2기	2019년 1기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9	12	23	20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100.0	100.0	100.0	99.0

※(참고) 부가율 = (매출액-매입액) ÷ 매출액
 (매출액 : 신고서 상 과세표준 - 수입금액외, 매입액 : 신고서상 매입금액 - 고정자산매입액)

※(참고) 연세매출금액 : 신고서 상 과세표준, 연세 수입금액 : 신고서 상 연세사업수입금액
 연세수입금액 = 과세매출금액 + 연세 수입금액
 연세매출비율 : 연세 수입금액 ÷ 연세 매출금액

※(참고) 과세매출금액 : 신고서 상 과세표준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 신고서 상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 :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 ÷ 과세 매출금액

2) 안내항목

NO	항목	업종	사전안내항목	자료수집처
1	매입	공통	면세·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	과세인프라
2	매입	공통	사실과 다른 매입거래에 대한 불공제 내역	과세인프라
3	매입	공통	신종 업종(유튜버, SNS마켓 공유숙박, 블로그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4	매출	공통	영세율 매출 사업자의 수출통관자료 대사 자료	과세인프라
5	기타	공통	월조기 환급신고분 확정신고 반영 배제 안내	과세인프라
6	매출	공통	위장가맹점 명의로 부당 발급한 매출 내역	과세인프라
7	매출	공통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8	매출	공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신고금액 차이 분석 자료	과세인프라
9	매출	공통	현금영수증 발급 위반 매출 내역	과세인프라
10	매입	공통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구입 내역	과세인프라
11	매입	공통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임차 내역	과세인프라
12	매입	공통	개인적 사용혐의가 있는 신용카드 수취 내역 안내	과세인프라
13	매입	공통	그 밖의 신용카드 과다 매입 사업자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안내	과세인프라
14	매입	공통	금융자문·감정평가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과세인프라
15	매입	공통	면세·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 매입 내역	과세인프라
16	매입	공통	사업용 신용카드 미사용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17	기타	공통	연속 3개 과세기간 일반환급 신고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18	매입	공통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제외 안내	과세인프라
19	매입	공통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수취한 토지 관련 매입 내역	과세인프라
20	매출	공통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안내	과세인프라
21	매출 매입	공통	과·면세겸업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22	매출	공통	신용카드만 신고하는 현금수입업종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23	기타	공통	세금계산서합계표 오류 사업자 안내	과세인프라
24	매출	공통	개별소비세 대상 자동차 명의이전 자료 안내	과세인프라
25	매출	공통	면세로 잘못 신고하는 승차권 판매수수료 안내	과세인프라
26	매출	공통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 유류매입액 안내	과세인프라
27	매입	공통	겸영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내문	과세인프라
28	매출	공통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현금매출 성실신고 안내	외부수집자료
29	매출	공통	국가기관 등과 거래분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NO	항목	업종	사전안내항목	자료수집처
30	매입	공통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항목(외제차)	과세인프라
31	매입	공통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32	매출	공통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정 여부 확인 안내	과세인프라
33	매입	공통	사업용신용카드 중복공제 안내	과세인프라
34	매출	건설	(근로복지공단 수집)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현황 자료	외부수집자료
35	매출	건설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 과세매출 신고 안내	빅데이터
36	매출	건설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자료	외부수집자료
37	매출	건설	한국감정원 수집 아파트 시설공사 실적 자료	외부수집자료
38	매출	건설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집한 전기검사 실적 자료	외부수집자료
39	매출	건설	건설업(토공사)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40	매출	건설	소방시설공사 착공 내역 안내	외부수집자료
41	매출	도소매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집) 장애인보조기기 보조금 지급내역	외부수집자료
42	매출	도소매	(이동통신사 수집) 휴대폰단말기 할부채권 양수도 현황 자료	외부수집자료
43	매출	도소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투닝승인 내역 분석 자료	외부수집자료
44	매출	도소매	퍼스널 모빌리티용품 온라인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45	매입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매입내역 분석 자료 안내	과세인프라
46	매출	도소매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 내역	과세인프라
47	매입	도소매	자동차해체 활용업체 폐차 매입자료 수집안내	외부수집자료
48	매출	도소매	핀테크 결제내역 등 오픈마켓 실판매자 매출 내역	과세인프라
49	매출	도소매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50	매입	도소매	동일인으로부터 다수의 중고자동차 구입한 내역	과세인프라
51	매출	도소매	약국 사업자 마스크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52	매출	도소매	자동차매매상사 현금영수증 매출 등 과소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53	매입	도소매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과세인프라
54	매출	도소매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성실신고안내	과세인프라
55	매출	도소매	편의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56	매출	도소매	골프용품 도소매업자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57	매출	부동산	부동산임대업자 부당환급 및 매출누락 혐의자료	빅데이터
58	매출	부동산	부동산매매업자 판매 실적 자료 안내	과세인프라
59	매출	부동산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건물가액 과소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60	매출	부동산	부동산개발업 사업자 현금지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NO	항목	업종	사전안내항목	자료수집처
61	매입	부동산	오피스텔 시설투자 조기환급 후 무실적, 무신고 사업자 안내	과세인프라
62	매출	부동산	건물 분양계약 해제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63	매입	부동산	생활형 숙박시설 등 매입세액 불공제 및 매출액 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64	매출	서비스	배달대행 가맹사업자 수수료 관련 분석 자료	과세인프라
65	매출	서비스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집한 공인중개사 중개 실적 자료	외부수집자료
66	매출	서비스	미용실 봉사료 관련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67	매입	서비스	문화재 발굴용역에 따른 매입세액 부당공제 안내	과세인프라
68	매출	서비스	배달앱 매출 등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69	매출	서비스	방역업체 사업자 성실신고안내	외부수집자료
70	매출	서비스	스크린골프사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71	매출	서비스	플랫폼운영사업자 통한 매출거래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72	매출	서비스	반려동물 이용서비스 및 용품 비대면 매출 신고 안내	외부수집자료
73	매출	서비스	프리랜서 플랫폼 매출액 신고누락 성실 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74	매출	서비스	운수사업자 그 밖의 신용카드 매입 과다자료	과세인프라
75	매출	서비스	키즈플랫폼을 통한 기타매출 관련 사전안내	과세인프라
76	매입	서비스	골프부킹앱을 통한 지급수수료 관련 사전안내	과세인프라
77	매입	음식	의제매입세액 공제 관련 면세 매입비율 분석 자료	과세인프라
78	매입	음식	과·면세 경업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 안내	과세인프라
79	매입	운수	운수사업자 그 밖의 신용카드 매입 과다자료	과세인프라
80	매출	전문직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 자료	과세인프라
81	매출	전문직	치과 병의원 과세 치료항목 안내	과세인프라
82	매출	전문직	고소득·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83	매출	전문직	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84	매출	전문직	피부·성형외과 보톡스(필러)관련 매출액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85	매출	제조	제조업 신용카드발행세액 부당공제 안내	과세인프라
86	매출	제조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집한 폐기물 처리업체 실적 자료	외부수집자료
87	매출	제조	도소매 경업 제조업체가 잘못 신고하는 사례	과세인프라
88	매출	제조	철스크랩 매출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89	매출	기타	간이과세 유형전환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과세인프라
90	매출	기타	아파트 입주민에게 제공한 용역 기타매출 신고안내	과세인프라
91	매출	기타	차명계좌신고 과다 업종 성실신고 안내	과세인프라

나.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유권해석 사례

○ 주요세법 해석사례 32건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과세대상	가상자산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45, 2021.03.02.)
공통	과세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자(이하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를 행사하여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01, 2020.02.06)
공통	과세대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건물 소유자와의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 2020.01.07)
건설업	과세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으로 공급받기로 시공사와 일괄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급받는 용역은 주택건설 용역과 구분되는 별도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주택건설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4, 2019.01.15)
공통	사업자등록	개인이 기존 부동산임대업의 공동사업장에 노무를 출자함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출자가액, 출자지분, 손익분배비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동업계약을 체결(변경)한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및 출자지분 변경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0192, 2019.06.11)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사업양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 2020.03.12)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집합건물 내에 2개의 구분등기 된 상가를 소유한자가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실 상태인 하나의 상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53, 2020.11.04.)
부동산임대업	사업양도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해당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79, 2019.08.07)
상품중개	영세율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인터넷 상의 오픈마켓을 통하여 상품판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0, 2021.05.26)
공통	영세율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별도 대가를 받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9, 2021.03.02.)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교육업	면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 2020.08.14.)
교육	면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체육교습소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이론·지식·기술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체육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서면-2020-부가-6079, 2021.01.08.)
교육업	면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산림치유업, 숲해설업, 유아숲교육업, 숲길등산지도업, 종합산림복지업을 영위하며 수강생들에게 산림과 관련된 지도·교육·치유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019-법령해석부가-0677, 2019.05.03)
공통	매입 세액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 확장을 통해 시장지배를 강화할 목적으로 타법인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외부업체로부터 금융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기준-2019-법령해석부가-0479, 2019.07.11)
서비스	매입 세액공제	외국인관광객을 모집하여 국내 상품판매점에 데려다 주는 서비스(이하 "송객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여행사가 송객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의 숙박비·교통비·식비 등을 부담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19.06.24)

업종	분야	해석 사례
임대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종(이하 “본점”)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본점과 별도의 부동산 소재지에 지점을 설립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본점 이전을 위하여 취득한 사무실을 종종 업무와 부동산임대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사무실을 종종 업무에 사용하면서 본점 직원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 단순 용역만을 일부 수행하여 사실상 해당 사무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무실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사전-2021-법령해석부가-0071, 2021.02.23)
공통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2020.3.12. 이전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거래처의 채무일부는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의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254, 2020.03.04)
공통	대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 매출금등의 회수기일이 20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05.31.)
공통	신용카드등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6조제1항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 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 2020.08.12.)
공통	신용카드등 세액공제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1137, 2020.12.31.)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개인 서비스	공급가액	<p>미용실 운영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인 미용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는 미용사에게 시설물 등을 제공하고 미용사는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며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매출분리결제서비스에 가입하여 고객이 미용용역의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시 사업자에게 귀속될 금액과 미용사에게 귀속될 금액이 분리결제 되는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고객이 결제한 대가 전체(부가가치세 제외)가 되는 것임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94, 2019.08.19)</p>
부동산임대업	공급가액	<p>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계약상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이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으로 받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0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737, 2021.04.29.)</p>
부동산매매업	공급시기	<p>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 제과-243, 2020.06.18))</p>
건설업	공급시기	<p>건설업자가 부동산임대업자(이하 “발주자”)와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였으나 발주자와 건설업자간 공사지연 및 하자 등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사용승인일)이며 건설업자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자는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42, 2018.09.27)</p>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에누리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 “통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통신료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2021.01.06)
공통	에누리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서면-2018-법령해석부가-3495, 2019.04.25)
공통	세금계산서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본점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업에 관한 총괄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지점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7, 2021.01.22.)
공통	세금계산서	공동도급공사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임(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73, 2016.02.29)
공통	세금계산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공동도급공사를 수행할 때 대표자가 해당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인건비 등을 선부담하고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부터 구성원 부담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인건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4, 2020.09.10)

업종	분야	해석 사례
공통	세금계산서	사업장을 구분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 2016.11.09)
공통	가산세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의해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5, 2017.11.16)
공통	가산세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지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본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027, 2019.03.12)

3

주요 세법 개정내용

-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로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 2)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①)
-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①·②)
- 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조특령 §106④, 조특칙 §48①)
- 5)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①, 부가령 §109①)
-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 7) 간이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 8)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111②)
- 9)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①)
- 10)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부가령 §70③)
- 11)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허용
(부가령 §71의2①)
- 12)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부가령 §73⑩)
- 13)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2)
- 1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 15)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부가법 §46③, 부가령 §88⑤)
- 16)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부가법 §63, 부가령 §111)
- 17)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부가령 §86③, §112③)
- 18)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부가법 §65, 부가령 §113)
- 19)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부가법 §66, 부가령 §114)
- 20)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부가법 §67)
- 2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부가령 §114③)
- 2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 사용요건(부가칙 §47①)
- 2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부가법 §68, §68의2)
- 24)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 등
(조특법 §108, 조특령 §110①)
- 25) 일몰기한 연장 규정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부가칙 §47)

○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p> <p>*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p> <p>**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 365 × 이자율</p> <p><input type="radio"/> 연 1.8%</p>	<p><input type="checkbox"/> 이자율 하향 조정</p> <p><input type="radio"/> 연 1.8% → 1.2%</p> <p>*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과 동일 수준</p>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3.16.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부가령 §91의2①)

○ 개정취지

- 중소·중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p> <p>*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예정(확정) 신고시 정산·납부</p> <p>① 수출비중·수출액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p>② 최근 3년간 계속 사업을 경영하고, 관세·조세범 처벌 사실이 없을 것</p> <p>③ 최근 2년간 관세·국세 체납 및 납부유예 취소사실이 없을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내 체납세액 납부시 제외 	<p><input type="checkbox"/>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p> <p>① 수출비중·수출액 요건 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p>(좌 동)</p>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2.17. 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부가령 §68①·②)

○ 개정취지

- 세원 투명성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input type="radio"/> 모든 법인사업자 <input type="radio"/>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input type="checkbox"/>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3억원 → 2억원 이상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0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 (조특령 §106④, 조특칙 §48①)

○ 개정취지

-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input type="radio"/>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 국민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input type="checkbox"/> 면세대상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 <input type="radio"/> (좌 동) - 국민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은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

5)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①, 부가령 §109①)

○ 개정취지

-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적용 범위 <input type="radio"/>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input type="checkbox"/> 기준금액 상향 <input type="radio"/>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유종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시 2021.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 개정취지

-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input type="radio"/>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input type="checkbox"/>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input type="radio"/>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간이 배제업종 추가(부가령 §109②)

○ 개정취지

- 간이과세 제도 합리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배제업종</p> <p><input type="radio"/> 광업</p> <p><input type="radio"/> 제조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과자점업, 양복점 등)은 제외</p> <p><input type="radio"/> 도매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p> <p><input type="radio"/> 과세유홍장소 및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p> <p><input type="radio"/> 전문자격사 등 * 변호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의사업, 감정평가사업, 공인노무사업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input type="radio"/>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 * (좌 동)</p>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p><input type="radio"/>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업</p> <p><input type="radio"/> 건설업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도배 · 실내 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 배관 및 냉 · 난방 공사업 등)은 제외</p>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복사업 등)은 제외 ○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 ·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부가령 §111②)

○ 개정취지

- 간이과세 제도 합리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율 조정
구 분	부가 가치 율	구 분
1.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	5%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2.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2.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3. 제조업, 농업 ·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3. 숙박업
4.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6. 그 밖의 서비스업
		40%
		30%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9)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①)

○ 개정취지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p> <p><input type="radio"/> (원칙) 영수증 발급</p> <p><input type="radio"/> (예외) 없음</p> <p>*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p>	<p><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p> <p><input type="radio"/>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p> <p><input type="radio"/> (예외) 영수증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 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육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①, ② 업종)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 받는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③ 업종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보완(부가령 §70③)

○ 개정취지

-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합리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p><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 일반과세자로 전환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p> <p><input type="checkbox"/> (작성일)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기재 * 비고란에 사유 발생일을 기재</p> <p><input type="checkbox"/> (금액) 추가금액은 검은색 글씨, 차감금액은 붉은색 글씨(또는 음의 표시)로 기재</p>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적용

11)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생 세금계산서 허용 (부가령 §71의2①)

○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을 정비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요건</p> <p>*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과세당국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p> <p><input type="checkbox"/> (공급자) 다음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영 §73③,④) 포함 - 간이과세자 제외 <p><input type="checkbox"/> (신청기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p>	<p><input type="checkbox"/> 발행 요건 변경</p> <p><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p> <p style="text-align: right;">(좌 동)</p> <p style="text-align: right;"><삭 제></p> <p><input type="checkbox"/> (좌 동)</p>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2)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범위 조정 (부가형 §73⑩)

○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의 범위 규정 정비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공급받는 사업자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등*의 범위</p> <p>* 적용대상(『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p> <p>① (제3항~제5항) 공급받는 자 요구 시 세금 계산서 발급 사업자</p> <p>② (제8항)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여 영수증 발급 시 세액을 별도로 기재해야 하는 사업자</p> <p><input type="radio"/> 일반과세자</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 포함</p> <p><input type="radio"/> (좌 동)</p> <p><input type="radio"/> 간이과세자</p> <p>-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사업자 및 신규사업자 제외</p>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부가령 §73의2)

○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 사업자 통지 규정 신설<input type="radio"/> (통지) 발급 적용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영수증 발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input type="radio"/> (사업자등록증 정정 발급)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14)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 개정취지

-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일반 · 간이과세자 통합 적용													
<input type="radio"/>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input type="radio"/> (공제대상 결제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input type="radio"/> (공제한도)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말까지 1,000만원 														
<input type="radio"/> (공제율) <table border="1" data-bbox="270 963 689 1100"> <tr> <th></th> <th>공제율</th> <th>2021.12.31.까지</th> </tr> <tr> <td>간이과세자 (음식 · 숙박업)</td> <td>2.0%</td> <td>2.6%</td> </tr> <tr> <td>기타 사업자</td> <td>1.0%</td> <td>1.3%</td> </tr> </table>		공제율	2021.12.31.까지	간이과세자 (음식 · 숙박업)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input type="radio"/> 공제율 단일화 <table border="1" data-bbox="803 963 1187 1032"> <tr> <th>공제율</th> <th>2021.12..31.까지</th> </tr> <tr> <td>1.0%</td> <td>1.3%</td> </tr> </table>	공제율	2021.12..31.까지	1.0%	1.3%
	공제율	2021.12.31.까지												
간이과세자 (음식 · 숙박업)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공제율	2021.12..31.까지													
1.0%	1.3%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부가법 §46③, 부가령 §88⑤)

○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 세액공제 허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공제 요건 <input type="radio"/> (공급자) 일반과세자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 · 이발 · 미용업, 여객운송업 (전세버스 제외), 미용 · 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 · 자동차운전학원 등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radio"/> (공급받는 자) 일반과세자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input type="radio"/> (공급자)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다음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input type="radio"/> (좌 동)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부가법 §63, 부가령 §111)

○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방식 합리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5%~ 30%)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 (공급대가) × 0.5%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매입에 대한 세액공제 불필요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가 과세 ·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input type="checkbox"/>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input type="checkbox"/>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frac{\text{해당}}{\text{과세기간에}} \times \frac{\text{해당}}{\text{과세기간의}} \times \frac{\text{해당}}{\text{업종}} \times \frac{\text{부가}}{\text{부가가치율}}$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발급받은 세금계산서등에 } \times \text{ 적힌 매입세액} \times \text{ 과세기간의 총공급대가} = \text{부가가치율}$ </div> </div>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frac{\text{해당}}{\text{과세기간에}} \times \frac{\text{해당}}{\text{과세기간의}} \times \frac{\text{부가}}{\text{부가가치율}} \times \frac{\text{해당}}{\text{용역의 공급대가}} \times \frac{\text{부가}}{\text{합계액}} = 0.5\%$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text{발급받은 재화 } \times \text{ 해당 } \times \text{ 해당 } \times \text{ 해당 } \times \text{ 해당 } \times 0.5\%$ </div> </div>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7) 재고매입세액 및 재고납부세액 산정방식 변경(부가령 §86③, §112③)

○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에 따라 재고매입 · 납부세액 관련 규정 정비
 - * (현행) 매입세액 × 부가가치율(5~30%) → (개정) 공급대가 × 0.5%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과세유형 전환 시 재고품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납부세액에 가산	<input type="checkbox"/> 산정방식 변경
<input type="radio"/> 재고매입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과세 → 일반과세로 전환 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공제대상 매입세액} \times \left(1 - \frac{\text{해당업종 부가가치율}}{10} \right)$ </div>	<input type="radio"/> (좌 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공제대상 매입세액} \times \left(1 - 0.5\% \times \frac{110}{10} \right)$ </div>
<input type="radio"/> 재고납부세액(가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세 → 간이과세로 전환 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공제받은 매입세액} \times \left(1 - \frac{\text{해당업종 부가가치율}}{10} \right)$ </div>	<input type="radio"/> (좌 동)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text{공제받은 매입세액} \times \left(1 - 0.5\% \times \frac{110}{10} \right)$ </div>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8)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배제 (부가법 §65, 부가령 §113)

○ 개정취지

- 중복 세액공제 방지 및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형평 제고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공제율)로 의제 공제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input type="checkbox"/> (공제율) <table border="1" data-bbox="267 1077 669 1327"> <thead> <tr> <th>업 종</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음식점 (개인)</td> <td>과세표준 4억원 이하 ('21년 말까지)</td> <td>9/109</td> </tr> <tr> <td></td> <td>과세표준 4억원 초과</td> <td>8/108</td> </tr> <tr> <td>음식점(법인)</td> <td></td> <td>6/106</td> </tr> <tr> <td>제조업</td> <td>과자점업 등 개인, 중소기업</td> <td>6/106 4/104</td> </tr> <tr> <td>과세유형장소, 기타</td> <td></td> <td>2/102</td> </tr> </tbody> </table> 	업 종	공제율	음식점 (개인)	과세표준 4억원 이하 ('21년 말까지)	9/109		과세표준 4억원 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제조업	과자점업 등 개인, 중소기업	6/106 4/104	과세유형장소, 기타		2/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 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 연매출 4,800~8,000만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중복공제에 해당 - 기존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납부면제 되므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필요
업 종	공제율																	
음식점 (개인)	과세표준 4억원 이하 ('21년 말까지)	9/109																
	과세표준 4억원 초과	8/108																
음식점(법인)		6/106																
제조업	과자점업 등 개인, 중소기업	6/106 4/104																
과세유형장소, 기타		2/102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9)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부가법 §66, 부가령 §114)

○ 개정취지

- 세원 투명성 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에 대한 예정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 (징수)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세액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 미징수 	<input type="checkbox"/> (좌 동) <div style="text-align: right;">]</div> <div style="text-align: right;">(좌 동)</div>
<input type="checkbox"/>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 신고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시 예정부과 및 징수 미적용 	<input type="checkbox"/> 신고사유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input type="checkbox"/>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가능 <div style="text-align: center;"><추 가></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신고의무
<input type="checkbox"/> 신고시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div style="text-align: center;"><추 가></div>	<input type="checkbox"/> 신고시 제출 서류 추가 <div style="text-align: right;">]</div> <div style="text-align: right;">(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0)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부가법 §67)

○ 개정취지

- 세원 투명성 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1.1.~12.31.) 납부세액 확정신고 ·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신고 및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시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25일 이내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신고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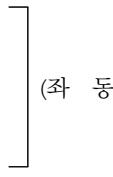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추가(부가령 §114③)

○ 개정취지

- 세원 투명성 강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항목 <input type="radio"/> 사업자의 인적사항 <input type="radio"/> 납부세액 및 그 계산 근거 <input type="radio"/> 가산세액 및 그 계산 근거 <input type="radio"/>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추 가>	<input type="checkbox"/> 신고서 항목 추가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좌 동) </div> <input type="radio"/>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 사용요건(부가적 §47①)

○ 개정취지

-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에 따른 신고 규정 정비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의 신고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❶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할 것 ❷ 영세율,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을 것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input type="checkbox"/> 간편신고서 사용자 요건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의 경우 정식 신고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해당 예정부과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없을 것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3)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부가법 §68, §68의2)

○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수수 유인을 통한 세원투명성 강화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간이과세자 가산세 부담 완화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간이과세자에 준용 <input type="radio"/>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60①) <추 가> <추 가> <신 설>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규정 보완 <input type="radio"/> (좌 동) <input type="radio"/> 세금계산서등 발급 관련 가산세 (§60②,③1·3·5호) <input type="radio"/>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60⑥)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input type="radio"/> (대상)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input type="radio"/> (가산세) 공급대가의 0.5%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율 인하
<input type="checkbox"/>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공제받지 않은 이후에 결정·경정을 통해 매입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input type="radio"/> 공급가액의 1%	<input type="radio"/> 1% → 0.5%

○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20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 20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4)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요건 정비 등 (조특법 §108, 조특령 §110①)

○ 개정취지

-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 지원 및 간이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조문 정비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재활용폐자원 ·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p> <p><input type="checkbox"/> (적용요건)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다음의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를 취득하여 제조 · 가공 · 공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과 · 면세사업 겸영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 <p><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 중고차 취득 가액</p> <p><input type="checkbox"/>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폐자원 : 3/103 - 중고차 : 10/110 </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폐자원 : 2021.12.31. - 중고차 : 2020.12.31. </p>	<p><input type="checkbox"/> 적용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p> <p>】 (좌 동)</p> <p>- 「부가가치세법」 제36조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 * 공급받는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p> <p>】 (좌 동)</p> <p>- 중고차 : 2022.12.31.</p>

○ 적용시기

- (적용요건 정비) 2021.7.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25) 일몰기한 연장 규정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 §106②)

○ 개정취지

-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p> <p><input type="radio"/>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는 경우</p> <p><input type="radio"/>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p> <p><input type="radio"/> (적용대상 기자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비료, 농약, 사료, 기계 등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p> <p><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20.12.31.</p>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p> <p><input type="radio"/> (좌 동)</p> <p><input type="radio"/> 2022.12.31.</p>

□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 개정취지

- 간이과세 개인택시 사업자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개인택시 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20.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radio"/> 2022.12.31.

□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 개정취지

- 육아비용 경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20.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input type="radio"/> 2022.12.31.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7의2①)

○ 개정취지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input type="radio"/>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input type="radio"/>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20.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input type="radio"/> (좌 동)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input type="radio"/> 2022.12.31. </div>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7의3①)

○ 개정취지

-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지원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input type="radio"/>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input type="radio"/>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2020.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2년 연장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input type="radio"/> (좌 동)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input type="radio"/> 2022.12.31. </div>



전자신고·납부 요령

1. 전자신고 요령

- 홈택스(PC)
- 홈택스(모바일)
- 보이는 ARS 신고 방법

2. 전자납부 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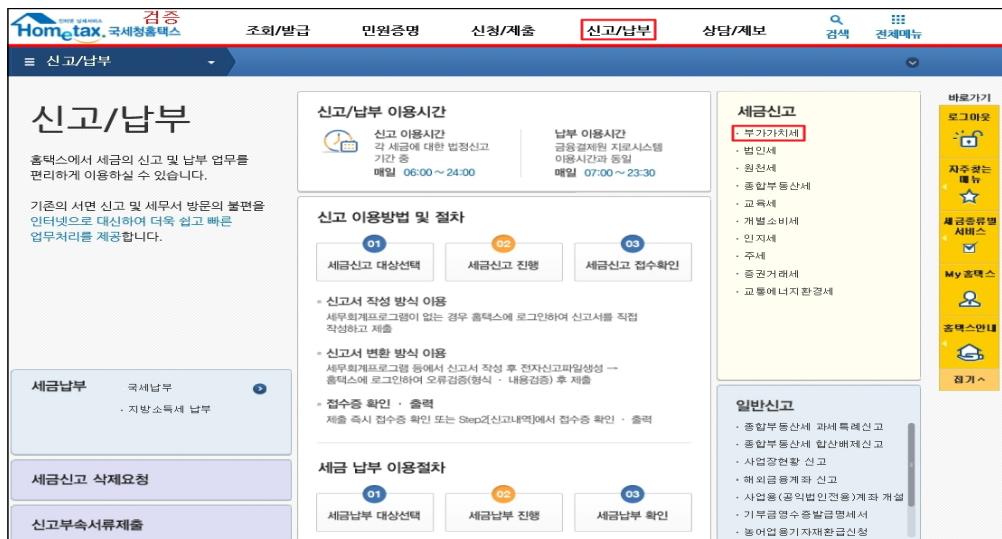
-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모바일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수동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는 방법

1 전자신고 요령

가. 흠택스(PC)

1) 접근경로

- 흠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를 클릭



HomeTax, 국세청홈택스

신고/납부

신고/납부 이용시간
신고 이용시간
각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
기간 중
매일 06:00 ~ 24:00

납부 이용시간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매일 07:00 ~ 23:30

신고 이용방법 및 절차
01 세금신고 대상선택
02 세금신고 진행
03 세금신고 접수확인

신고서 작성 방식 이용
세무회계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흠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제출

신고서 변환 방식 이용
세무회계프로그램 등에서 신고서 작성 후 전자신고일상성 → 흠택스에 로그인하여 오류검증(형식 · 내용검증) 후 제출

접수증 확인 · 출력
제출 즉시 접수증 확인 또는 Step2(신고내역)에서 접수증 확인 · 출력

세금 납부 이용절차
01 세금납부 대상선택
02 세금납부 진행
03 세금납부 확인

세금납부
국세납부
· 지방소세 납부

세금신고 삭제요청

신고부속서류제출

세금신고/납부

신고/납부

상단/제보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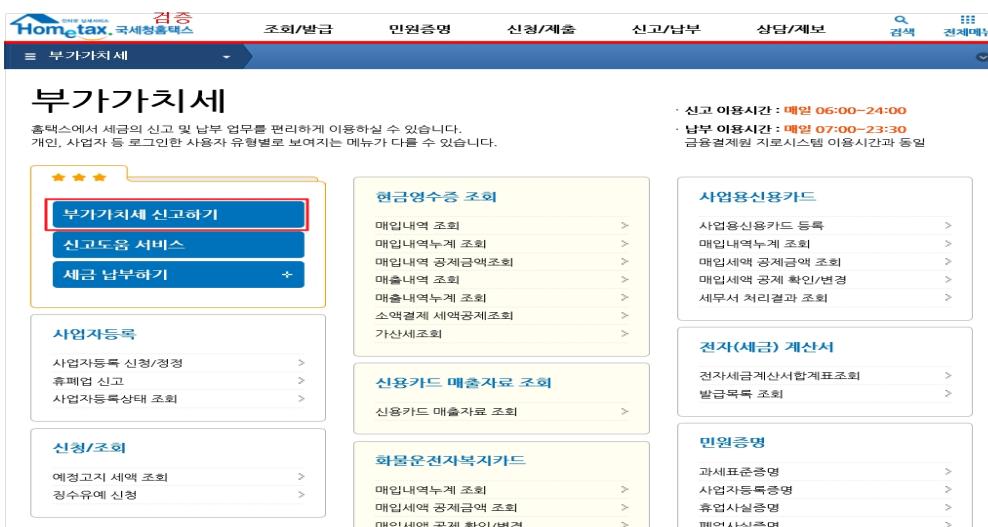
전체메뉴

부가가치세
- 법인세
- 원천세
- 종합부동산세
- 교육세
- 개별소비세
- 인지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대통령에너지환경세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 기부금수증발급명세서
- 농어업용기자재한급신청

일반신고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 사업장현황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사업용(공익법인전용)계좌 개설
- 기부금수증발급명세서
- 농어업용기자재한급신청

- 흠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 ⇒ '부가가치세'를 클릭 ⇒ 부가가치세 전용화면 ⇒ '부가가치세 신고하기'를 클릭



HomeTax, 국세청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
납부 이용시간 : 매일 07:00~23:30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동일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신고도움 서비스
세금 납부하기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휴폐업 신고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신청/조회
예정고지 세액 조회
정수유예 신청

현금영수증 조회
매입내역 조회
매입내역 누계 조회
매입내역 공제금액 조회
매출내역 조회
매출내역 누계 조회
소액결제 세액공제 조회
기산세 조회

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매입내역 누계 조회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세무서 처리결과 조회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내역 누계 조회
매입세액 공제금액 조회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전자(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 합계 조회
발급목록 조회

민원증명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를 클릭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안내자료, 신고 참고 사항을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기기자세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 전자신고 이용방법 | 부기기자세 전자신고 자주하는 질문 | 부기기자세 전자신고 작성방법(첨부서류별)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조기환급신고 (결별)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신고납부 기한연장 대상자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직전기와 계약동일)	기한후신고 (계속사업자)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정기신고 (분납형신고)		

- 사업자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클릭

부가가치세 신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기기자세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 전자신고 이용방법 | 부기기자세 전자신고 자주하는 질문 | 부기기자세 전자신고 작성방법(첨부서류별)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조기환급신고 (결별)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신고납부 기한연장 대상자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직전기와 계약동일)	기한후신고 (계속사업자)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등)	정기신고 (분납형신고)		

〈참고〉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전자신고 방법

-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상담 시 해결이 어려우면 국세상담센터 (☎126) 전화하도록 안내

부가가치세 신고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부기기자세 신고도움 서비스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 전자신고 이용방법 | 부기기자세 전자신고 자주하는 질문 | 부기기자세 전자신고 작성방법(첨부서류별)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조기환급신고 (결별)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신고납부 기한연장 대상자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직전기와 계약동일)	기한후신고 (계속사업자)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등)	정기신고 (분납형신고)		

2) 신고유형별 버튼 선택

- 정기신고(예정/확정) : 예정·확정신고 시 선택
- 정기신고(폐업확정) :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시 선택
 -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을 경과하여 신고 시에는 ‘기한후신고’ 선택
- 조기환급신고 : 월별 조기환급신고 시 선택
- 기한후신고 : 예정·확정신고기간 경과 후 신고 시 선택
- 수정신고 : 예정·확정신고 분 수정신고시 선택 (조기환급분은 불가)
- 경정청구 : 예정·확정신고 분 경정청구시 선택 (조기환급분은 불가)
- 대리납부신고* : 대리납부 신고 시 선택
 - *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은 경우
- 증빙서류 제출 : 신고 증빙서류를 PDF, 이미지 파일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신고안내 동영상 보기
전자신고 이용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차등하는 질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특성방법(첨부서류별)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조기환급신고 (월별)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신고납부 기한연장 대상자

●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확정/예정)
정기신고 부동산임대사업자 (직전기와 계약등일)
기한후신고 (계속사업자)
수정신고
경정청구

정기신고 (폐업확정)
파일변환신고 (회계프로그램 등)
정기신고 (문답형신고)

● 기타/증빙서류

대리납부신고
증빙서류 제출

● 카드사 대리납부

정기신고 (확정/예정)
수정신고
경정청구

-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 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폐업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확정신고 기한내에는 청정(재전송)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사업자의 확정 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기간은 1.1부터 1.25까지입니다.

- 위 메뉴의 ‘부동산임대사업자’ 신고버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자
- ① **부동산임대 사업자(간이)**로서
- ② **직전기와 임대차 계약내용이 등밀(직전기 신고서 존재)하며**
- ③ **부동산임대공급기액명세서 외 다른 첨부서류가 없는 경우**
- 이 버튼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기액명세서’, ‘세액’ 등 신고서 내용을 자동으로 채워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경정청구는 5년 이내 가능

72 II. 전자신고 · 납부 요령



3) 일반과세자 전자신고 작성방법

-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 클릭하면 사업자세부사항이 조회됨
 - 단일사업장을 영위하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번호 자동 제공

-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히 신고 종료
- 사업자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 입력서식 선택화면에서 필요한 서식을 선택

부가가치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삭제내역

메뉴펼침
메뉴접기

영락엔지니어링 | 101-01-20494

제출여부 작성종입니다.

미리보기 제출

01. 일반과세자 기본정보 입력

일반과세자 입력서식 선택

02. 일반과세자 신고내용

03. 신고서제출

● 입력서식 선택

입력할 서식을 선택하신 후, 신고서 제출까지 내용을 입력하십시오.
 체크 표시를 하면 왼쪽에 입력할 서식이 메뉴로 나타납니다.
 주업종코드에 해당하는 서식은 아래와 같이 기본적으로 선택됩니다.
 ※ '경감·총세내역/기산세액/예정고지(신고)'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화면하단의 선택사항을 체크하셔야 신고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입력서식 도움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입세액/경감·공제세액	기타제출서류(영세점 제외)	기타제출서류(영세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input type="checkbox"/> 동물진료용역 매출영세서	<input type="checkbox"/> 영세점 매출영세서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input type="checkbox"/>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수출기입 수입부류에)	<input type="checkbox"/> 건물관리영세서	<input type="checkbox"/> 수출실적영세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합계표	<input type="checkbox"/> 건물 등 간가상각자산 매입영세서 (고정자산매입이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사업장현황영세서	<input type="checkbox"/> 내국산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영세서
<input type="checkbox"/> 전자화폐결제 명세서	<input type="checkbox"/>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도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영세점 부서별 제출명세서
<input type="checkbox"/> 현금매출 명세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영세서	<input type="checkbox"/>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등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관세현금금 등 명세서
<input type="checkbox"/>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외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input type="checkbox"/>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input type="checkbox"/> 선박에 의한 운송용역 증급기액 일람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매출분	<input type="checkbox"/> 흉상등계출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외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input type="checkbox"/> 공급기액 확정영세서
<input type="checkbox"/> 예정신고누락분	<input type="checkbox"/> 2019년 주세계 수령 선수권대회 외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외항 선박 등에 제공한 제화증의 일람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과세표준명세	<input type="checkbox"/> 과세표준부자립 및 증고 지동처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단위세액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재화증의 공급기록표
<input type="checkbox"/> 면세수입금액	<input type="checkbox"/> 과세사업전환 간가상각 자산 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물품판매, 외교관 면세판매 기록표	
	<input type="checkbox"/> 대손세액 변제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외화회득명세서	
	<input type="checkbox"/> 과세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input type="checkbox"/> 활별 판매액 합계표	
	<input type="checkbox"/> 경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관광객 면세물품 판매 및 환급실적명세서	
	<input type="checkbox"/> 예정신고누락분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관광객 즉시환급 물품 판매 실적명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공제매입세액	<input type="checkbox"/>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공급기록명세서	
	<input type="checkbox"/> 과세받지 못할 매입세액 (대손처분 받은 세액)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input type="checkbox"/> 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input type="checkbox"/>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 세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서		

경감·공제세액	예정고지·예정신고 비원금세액	기납부세액	가산세
<input type="checkbox"/>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	<input type="checkbox"/> 예정고지세액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input type="checkbox"/> 현금영수증사업자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예정신고미환급세액	<input type="checkbox"/> 매입자납부특례기납부세액	
<input type="checkbox"/> 전자신고공제세액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신고서식을 선택 완료하였으면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74 II. 전자신고 · 납부 요령

○ 신고서 작성화면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속서류를 작성

- 매입세액 작성 전에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해야 공제세액이 정확히 계산됨
- 가산세 입력화면은 '뒷쪽으로'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입력

● 신고내용(앞쪽)

일반반세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고내용 입력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화면의 선택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작성하기 버튼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미리보기]는 '신고서입력완료' 버튼을 누르신 후 보서와 작성된 첨부서류내용이 신고서반영되어 보여집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3)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작성하기	10 / 100 0
영세증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작성하기	0 / 100 0
영세증세 기타	(6) 0	작성하기	0 / 100 0
예정신고 누락분	(7) 0	작성하기	0
대손세액 가감	(8) 0	작성하기	0
합계	(9) 0	작성하기	0

● 과세표준명세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신 분은 "매입세액" 작성전 반드시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매입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10) 0	작성하기	0
세금계산서수취분 수출기업 수입 납부유예	(10-1)	작성하기	0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1) 0	작성하기	0
예정신고 누락분	(12) 0	작성하기	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0	작성하기	0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입,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14) 0	작성하기	0
합계 (10)-(10-1)+(11)+(12)+(13)+(14)	(15) 0	작성하기	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0	작성하기	0
차감계 (15) - (16)	(17) 0	작성하기	0

납부(한금)세액 (매출세액 ⑨ - 매입세액 ⑮) 0

● 경감·공제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18) 0	작성하기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0	작성하기	0
합계	(20) 0	작성하기	0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과기지체 감면세액	(20-1) 0	작성하기	0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납부(한금) 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예정신고 미한금 세액	(21) 0	작성하기	0
예정고지세액	(22) 0	작성하기	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0	도움말	0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0	도움말	0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5) 0	조회하기	0
가산세액계	(26) 0	보조으로	0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 (한금받을 세액) (⑨-⑩-⑪-⑫-⑬-⑭-⑮+⑯)	(27) 0	작성하기	0

총합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 (한금받을 세액) 0

※ 신고대상기간 중에 예정고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보여지고 예정신고시 일반한금이 발생하여 예정신고미한금세액이 있는 경우 그 액을 보여줍니다.
 ※ 예정고지세액과 예정신고 미한금세액은 동시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 국세한금금 계좌신고(한금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단위: 원)

거래은행: -선택- 계좌번호: (-'-' 는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 면세사업 수입금액 (단위: 원)

금액 0 작성하기 ※ 면세매출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계산서 발급금액	(82) 0	작성하기	0
계산서 수취금액	(83) 0	작성하기	0

이전 신고서 입력완료

○ 신고내용(뒷쪽)에서는 기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가산세는 직접 입력

● 신고내용(뒤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과세자 과세표준 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고내용 입력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원쪽의 선택메뉴를 클릭하시면 해당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작성하기 버튼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 신고 누락분 명세 매출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33) 0	10 / 100	0
과세 기타	(34) 0	10 / 100	0
영세율 세금계산서	(35) 0	0 / 100	
영세율 기타	(36) 0	0 / 100	
합계	(37) 0		0
● 예정 신고 누락분 명세 매입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세금계산서	(38) 0		0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39) 0		0
합계	(40) 0		0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41) 0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경자산매입	(42) 0		0
의제매입세액	(43) 0		0
제휴용제자일등 매입세액	(44) 0		0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45) 0		0
제고매입세액	(46) 0		0
변제대손세액	(47) 0		0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48) 0		0
합계	(49) 0		0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 0		0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등분	(51) 0		0
대손처분받은 세액	(52) 0		0
합계	(53) 0		0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54) 0		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55) 0		0
액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56) 0		0
대리납부세액 공제	(57) 0		0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58) 0		0
기타	(59) 0		0
합계	(60) 0		0
● 가산세 명세 (단위: 원)			
항목	금액	도동별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역조회
사업자미등록 등	(61) 0	1 / 100	0
〈세금계산서〉자연발급 등	(62) 0	1 / 100	0
〈세금계산서〉자연수집	(63) 0	5 / 1,000	0
〈세금계산서〉비발급 등	(64) 0		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자연전송	(65) 0	5 / 1,000	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비전송	(66) 0	1 / 100	0
〈세금계산서접수표〉제출 불성설	(67) 0	5 / 1,000	0
〈세금계산서접수표〉자연제출	(68) 0	3 / 1,000	0
〈신고 불성설〉무신고(일반)	(69) 0		0
〈신고 불성설〉무신고(부당)	(70) 0		0
〈신고 불성설〉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71) 0		0
〈신고 불성설〉과소·초과환급신고(부당)	(72) 0		0
납부 불성설	(73) 0		0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설	(74) 0	5 / 1,000	0
현금매출액세서 불성설	(75) 0	1 / 100	0
부동산임대공급가액영세서 불성설	(76) 0	1 / 100	0
〈매입자 납부특례〉거래계좌 미사용	(77) 0		0
〈매입자 납부특례〉거래계좌 자연입금	(78) 0		0
합계	(79) 0		0
<input type="button" value="이전"/> <input type="button" value="신고서 입력완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배임자발행 세금계산서	(2)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3)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작성하기	10 / 100	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작성하기	0 / 100	0	
영세율 기타	(6) 0	작성하기	0 / 100	0	
매칭신고 누락분	(7) 0	작성하기		0	
대손세액 가감	(8) 0	작성하기		0	
합계	(9) 0	작성하기	0	0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변환페이지 이동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불러오는는 ‘기본정보입력’의 신고기간에 맞추어 조회됩니다. (기본정보입력의 과세기간이 3개월이하일시 3개월분, 3개월초과시 6개월분 전자세금계산서가 조회됨) • 세무대리인 또는 신고대리인은 본인이 수입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만 불러오기 및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조기환급신고시 또는 조기환급신고후 정기신고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조기환급후 정기신고시, 반드시 기환급신고분을 제외한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합계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원)	세액(원)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영세율분						
소계			과세분			
			영세율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	세액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아래 세부명세 입력시 자동합계됨
영세율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과세분		직접 입력
영세율분					
소계			과세분		
			영세율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시에만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 • 매출처가 등록한 세금계산서를 여러건 입력한 경우 각각의 개별 합계 표로 저장됩니다. • 주민등록번호발급분은 “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에 입력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발급분”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 전송기간마감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과세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과세분 <input type="radio"/> 영세율분 <input type="radio"/> 매입자발행분				
사업자등록번호	<input style="width: 100px; 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 type="text"/> 확인	상호(법인명)			
매수		건	공급가액	원	
세액		주류		비주류업체	▼
<small>※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small>					
<input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 type="button" value="입력내용추가"/>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원) 주류					
<small>1 총 0건(1/1)</small>					
<small>※ 세금계산서 내역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small>					
<input style="border: 1px solid blue; border-radius: 5px; padding: 2px;" type="button" value="선택내용 삭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원)
합계				

이전 입력완료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매출 작성하기

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단위: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0		10 / 100	0
과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3)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작성하기	10 / 100	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작성하기	0 / 100	
영세율 기타 (6)	0	작성하기	0 / 100	
예정신고 누락분 (7)	0	작성하기		0
대손세액 감감 (8)		작성하기		0
합계 (9)	0		0	0

클릭시 작성화면으로 이동

② 과세분 (단위:원)				
※ 예정신고 누락분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3)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0	세액(10/100)	0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0	세액(10/100)	0	

작성시 자동 입력됨

※ 아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단위:원)

신용카드매출금액등 발행금액집계표 (단위:원)				
작성하기	금액	0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작성하기	금액	0	

③ 영세율분 (단위:원)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또는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중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예정신고 누락분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6)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	0	세액(0/100)	0	

④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금액집계표				
도움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작성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주기기자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결제마행(택시, 이니시스, kcp 등) 사업자를 통해 결제한 신용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등 매출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행금액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발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합계
합계				
과세매출분	0	0		
면세매출분				
불사료				

조회하여 입력

※ 신용·직불·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

※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 발행내역조회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아래의 항목에 입력하십시오. (단위: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서 발급금액

이전

입력 완료

- 신고서 앞장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작성하기」 버튼을 선택하여도 작성 가능함

① 경감 · 공제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18)	작성하기	0 원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19)	작성하기	0 원
합계	(20)	@	0 원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밖의 경감 · 공제세액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 신용카드매출 등에 대한 공제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작성하기	0 원
전자화폐 매출금액	작성하기	0 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로, 전자화폐세액세율을 작성하면 금액을 반영하여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0 원	
공제세액	0 원	
기공제세액	0 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가능한 사업자와 입증

1. 법인납세자 : 공제 가능
2. 개인납세자 중 개인납세자 : 모든 업종 적용 가능
3. 개인납세자 중 일반납세자 : 회계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적용 가능
[단, 적전연도 공급가액(누가기자세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용 불가능]

※ 공제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금액금액)의 1.3%이며, 공제한도는 납부한 세액 범위 안에서 연간 600만원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금액은 납부할세액을 한도로 공제최므로 매출 · 매입을 모두 입력한 후 작성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전 입력완료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 표

·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작성합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은 주가기자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결제대행(택시, 이니시스, kcp 등) 사업자를 통해 결제한 신용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매출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구분	신용 · 적불 ·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적불 ·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합계
합계				
과세매출분	[]	[]		
면세매출분				
봉사료				

조회하여 입력

※ 발행금액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신용 · 적불 · 기명식선불카드 발행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 · 적불 · 기명식선불 카드 매출 총액	발행 내역조회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발행 내역조회

④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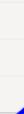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고부한 경우 아래의 항목에 입력하십시오. (단위: 원)

세금계산서 발급금액	계산서 발급금액
------------	----------

이전 입력완료

○ 기타매출 작성하기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단위: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0		10 / 100	0
과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3) 0	작성하기	10 / 100	0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0	작성하기	10 / 100	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0	작성하기	0 / 100	
영세율 기타	(6) 0	작성하기	0 / 100	
예정신고 누락분	(7) 0	작성하기		0
대손세액 가감	(8) 0	작성하기		0
합계	(9) 0		0	0



● 기타매출분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매출금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과세분과 영세율 적용분을 구분하여 입력하십시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임대업자 작성	작성하기	금액	0
현금매출명세서		작성하기	금액	0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작성한 보증금이자 합계 0 원을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포함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분

보증금이자를 포함하여 기재

(단위:원)

※ 예정신고 누락분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3)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123,456	세액(10/100)	12,344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0	세액(10/100)	0

순수 현금매출액을 작성

※ 아래 [신용카드매출전표동 발행금액집계표,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작성하시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단위:원)

신용카드매출금액 등 발행금액집계표	작성하기	금액	0
전자화폐결제명세서	작성하기	금액	0

● 영세율분

※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분 금액 또는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중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기재하십시오.
예정신고 누락분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6)영세율 기타 매출분 금액	0	세액(0/100)	0
------------------	---	-----------	---

이전

입력완료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하기(임대사업자)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도움말
변환페이지이동

전산매체 제작용으로 생성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부동산소재지 주소검색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 임대수입금액 합계

구분	임대차 계약내용 보증금	임대차 계약내용 월 임대료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 합계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 보증금 이자(계)	임대수입금액 (과세표준) 월 임대료(계)
합계					

● 임차인별 임대수입내용 직전기 신고 임차인 조회 작성 시 유의사항 갱신일 입력 도움말 총, 면적 입력요령

※ [임차인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직전기 임대사항명세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임차인조회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성명(상호)
갱신일	※ 과세기간 중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입주일(과세기간 시작일), 퇴거일(갱신일 전일) 갱신일(계약변경일)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입주일	퇴거일		

일자수정 버튼을 클릭 후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 수정

일자수정

● 갱신일, 입주일, 퇴거일 미입력시 보증금이자와 월임대료는 해당과세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계산됩니다.
● 임차인이 XXXXX년 XX월 XX일 ~ XXXXX년 XX월 XX일 중 입주 또는 퇴거한 경우에는 입주일 또는 퇴거일을
일자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 총 등 임대정보는 계약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입력 시 가산세 검토 대상)
● 면적 입력요령 :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공용면적 포함)
● 총 입력요령 : 임차인이 사용하는 모든 총 기재

직접 입력 후 버튼 클릭

※ 월별 조기환급금신고가 있는 경우, 예경 또는 확경 신고시 보증금 이자는 직접 계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대계약내용	보증금	월임대료
임대수입금액	보증금이자	월임대료합계

※ 임대사업명세내역을 추가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추가

● 보증금이자 계산 공식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일수 × 2.1%(이자율)) / 365(366)
● 월세 :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을 입력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 임대사업명세

							단위 (면적: m ² , 금액: 원)
□ 일련 번호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임차인 상호(성명)	입주일	갱신일	퇴거일	동	총
◀	▶						

1 총1건(1/1)

● 임차인 별 수입내용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을 정정하려면 삭제 후 입력해야 합니다.)

선택내용삭제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 과세표준명세서 작성하기

- 매입세액 작성 전에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해야 공제세액이 정확히 계산됨

①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 <input type="text" value="0"/> 작성하기	10 / 100	<input type="text" value="0"/>	
과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2) <input type="text" value="0"/>	10 / 100	<input type="text" value="0"/>	
과세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행분	(3) <input type="text" value="0"/> 작성하기	10 / 100	<input type="text" value="0"/>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4) <input type="text" value="0"/> 작성하기	10 / 100	<input type="text" value="0"/>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5) <input type="text" value="0"/> 작성하기	0 / 100	<input type="text" value="0"/>	
영세율 기타	(6) <input type="text" value="0"/> 작성하기	0 / 100	<input type="text" value="0"/>	
예정신고 누락분	(7) <input type="text" value="0"/> 작성하기		<input type="text" value="0"/>	
매출세액 가감	(8) <input type="text" value="0"/> 작성하기		<input type="text" value="0"/>	
합계	(9) <input type="text" value="0"/>	②	<input type="text" value="0"/>	

② 과세표준명세		(단위: 원)	
금액	<input type="text" value="0"/> 작성하기	※ 과세표준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작성하고 분은 "매입세액" 작성전 반드시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③ 과세표준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과세표준명세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매출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입력하십시오. 	

아래 입력사항에서 입력한 금액의 합계는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 <input type="text" value="0"/> 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업종코드	업태	종목	금액
701201	코드 조회	부동산업 및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기땅)
	코드 조회		<input type="text" value="0"/>
	코드 조회		<input type="text" value="0"/>
	코드 조회		<input type="text" value="0"/>
701201		기타금액(수입금액 제외분)	<input type="text" value="0"/>
합계			<input type="text" value="0"/>

※ 2개 이상의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업종코드를 조회하여 추가 또는 정정 하십시오.
 기타(수입금액제외)란에는 부기기자세는 과세되나 소득세 과세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고정자산매각, 직매장공급 등)을 기재합니다.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을 수취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

- 고정자산 매입은 일반매입 작성 후 고정자산으로 분류

● 매입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세율	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10)	0	작성하기	0	0
세금계산서 수취분 수출기업 수입 납부유예	(10-1)	0	작성하기	0	0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1)	0	작성하기	0	0
예정신고 누락분	(12)	0	작성하기	0	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0	작성하기	0	0
그 밖의 과세매입세액	(14)	0	작성하기	0	0
합계 (10)-(10-1)+(11)+(12)+(13)+(14)	(15)	0	작성하기	0	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0	작성하기	0	0
차감계 (15) - (16)	(17)	0	작성하기	0	0

→ 고정자산 매입은 일반매입 작성 후 분류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매체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및 불러오기는 ‘기본정보입력’의 신고기간에 맞추어 조회됩니다. (기본정보입력의 과세기간이 3개월이하일시 3개월분, 3개월초과시 6개월분 전자세금계산서가 조회됨) 세무대리인 또는 신고대리인은 본인이 수임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자료만 불러오기 및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신고서 또는 조기환급신고후 정기신고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조기환급후 정기신고시, 반드시 기환급신고분을 제외한 금액을 전자세금계산서합계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변환페이지 이동					

●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원)	세액(원)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1		과세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영세율분		
소계			과세분		
			영세율분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	세액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1		과세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영세율분		
소계			과세분		
			영세율분		

→ 아래 세무명세 입력시 자동 합계됨

→ 직접 입력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시에만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 매입처가 등록한 세금계산서를 여러건 입력한 경우 각각의 개별 합계표로 저장됩니다. 주민등록번호발급분은 “사업자등록번호발급분”에 입력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발급분”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전송기간마감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 					
과세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과세분 <input type="radio"/> 영세율분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확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원	
세액			원		
※ 세금계산서 내역을 입력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추가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원)	세액(원)
1 총0건(1/1)					
※ 세금계산서 내역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선택내용 삭제]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내용 삭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구분	매입처수	매수	과세구분	공급가액	세액
합계				원	원

이전 **입력완료**

○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세금계산서 수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 '건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입력 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분류됨

① 매입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	(10) 0	작성하기	0	
세금계산서 수취분 수출기업 수입 납부유예	(10-1)	작성하기	0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11) 0	작성하기	0	
예정신고 누락분	(12) 0	작성하기	0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3) 0	작성하기	0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14) 0	작성하기	0	
합계 (10)-(10-1)+(11)+(12)+(13)+(14)	(15) 0		0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 0	작성하기	0	
차감계 (15) - (16)	(17) 0		⑪	0

②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③ 감가상각자산 취득내역

•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만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
 • 신고대상기간 중 건축·구축물·기계장비·차량운반구·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상의 건수·공급가액·세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단위: 원)			
감가상각자산종류	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0	0	0
건축·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서류를 제출하실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신고 메인 화면에서 "부속서류제출하기"를 활용하십시오.

④ 합계

구분	건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0	0	0
세금계산서 수취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 제출분			

이전
입력완료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작성하기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작성하기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0	0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	작성하기	0	0
의제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재고매입세액		0	
면제대손세액	작성하기	0	0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0	
합계		0	0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도움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매체 제출을으로 생성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변환페이지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시에만 포함해서 입력하십시오.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자료는 환면하단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항목에만 입력하여야 합니다. 법인카드는 사업용신용카드이므로, 사업용신용카드란에 거래건수, 금급가액, 세액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영세 제출 불필요) 미리보기는 500건만 제공됩니다. 경기신고분 제제출, 수정신고, 경정정구시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이 2,0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파일 제출건은 200건 미만) 이미 제출된 내역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화면에서 작성 또는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거래내역을 추가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추가			
● 가맹점 정보			
카드회원번호	※ *, - 없이 입력하십시오.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건	
공급가액	원	세액	원
※ 거래내역을 추가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내용삭제			
● 가맹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			
□ 일련번호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			금급가액
			세액
1 총0건(1/1)			
※ 거래내역을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선택내용삭제			
● 합계			
구분	거래건수	금급가액	세액
합계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조회하기		
사업용신용카드	조회하기		
기타 신용카드			
※ 위 합계 금액 중 면세분매입금액, 면세사용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 입력란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구분	금급가액	세액	
면세분 일반매입			
면세분 고정자산매입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용금액 일반매입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용금액 고정자산매입			
이전			
입력완료			

- 의제매입신고서 작성하기

* 하단 파란색 박스 부분은 확정신고시에만 작성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구분	금액	세액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수령액에서 제출로 일반매입	작성여부	0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수령액에서 제출로 고정자산매입	작성여부	0
의제매입세액	작성여부	0
재화용 비자원 등 매입세액	작성여부	0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작성여부	0
재고매입세액	작성여부	0
변제대금세액	작성여부	0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작성여부	0
합계	작성여부	0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농·어민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

제조업자만 작성

● 공급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조회
● 견수	● 품명	
● 수량	● 매입가액	원

※ 신고내역을 추가하여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 농·어민등으로부터 매입분에 대한 명세

□ 일련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견수	품명	수량	매입가액	입력내용추가 (단위:원)
--------	----	--------	----	----	----	------	------------------

※ 거래사항기재내용을 삭제하여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 면세농수산물등 매입가액 합계

구분	* 매입액수	* 견수	* 매입가액	*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계산서	조회하기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5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9	
사업자로부터 매입분 신용카드 등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5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9	
농·어민등으로부터 매입분				<input type="checkbox"/> 2/102 <input type="checkbox"/> 4/104 <input type="checkbox"/> 6/105 <input type="checkbox"/> 8/108 <input type="checkbox"/> 9/109	
합계					

※ 합동에 따라 미리 지정한 공제율이 나타납니다.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면세농산물을 의제매입세액공제 합동액을 계산하는 화면입니다.
확정신고시에만 작성하여 증정(납부)할 세액이 신고서(42)번 세액에 반영됩니다.

● 파세기간과 파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파세표준	예정부	확정부	합계
대상액 합계	한도율	한도액	
당기 배급액	금액대상 금액		

● [한도율]
 - 일자사업자 : 40/100
 - 개인사업자 : 45/100 (파세표준합계가 2억 초과인 경우)
 50/100 (음식업자인 경우 + 파세표준합계가 2억 이하인 경우)
 55/100 (파세표준합계가 2억 이하인 경우)
 60/100 (음식업자인 경우 + 파세표준합계가 1억 초과 2억 이하인 경우)
 65/100 (음식업자인 경우 + 파세표준합계가 1억 이하인 경우)

● 면세농산물에 관련된 과세매출액 입력

● 파세기간 공제 할 세액

공제대상 세액	금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 받은 세액	예정신고부	월별조기부	합계
공제(납부) 할 세액			

● 공제대상세액
 - 공제대상금액 X 공제율
 - 공제율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계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

● 입력완료

-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신고서 작성하기

●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

• 의제매입세액을 과제받으려는 사업자가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 이 경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관련 신고내용>란은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 확정신고시에만 작성하며 골제(납부)할 세액이 신고서(42)번 세액에 반영됩니다.

1억년 과세표준 및 제2기 과세기간 골제 가능한 금액 등			(단위: 원)	
	제1기	제2기	합계	
과세표준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대상액 한도계산	한도율		한도액	
	<input type="radio"/> 30%	<input type="radio"/> 40%	<input checked="" type="radio"/> 50%	<input type="text"/>
1억년 매입액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골제대상 금액			<input type="text"/>	
● 제2기 과세기간 골제할 세액				
(단위: 원)				
골제대상 세액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input checked="" type="radio"/> 2/102	<input type="radio"/> 4/104	<input type="text"/>	
	제1기	총 합계		
이미 골제받은 세액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예정신고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월별조기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골제(납부)할 세액			<input type="text"/>	

- 재활용폐자원신고서 작성하기

* 하단 파란색 박스 부분은 확정신고시에만 작성(중고자동차 제외)

①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세액		
신용카드폐출전표등 수령영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0	0	
신용카드폐출전표등 수령영세서 제출분 고정자산매입	작성하기	0	0	
의제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제고매입세액	작성하기	0	0	
변제대손세액	작성하기	0	0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작성하기	0	0	
합계		0	0	

②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폐자원은 매입처별로 합계금액을 기재하여, 중고자동차는 거래 건별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시에만 포함하여 신고 하십시오. 				
변환페이지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매체 제품으로 생성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③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단위: 원)				
구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영수증 수취분				
계산서 수취분	조회하기			
합계				

④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				
(단위: 원)				
<input type="checkbox"/> 일련번호 <input type="checkbox"/> 성명(상호) <input type="checkbox"/> 주민(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매입건수 <input type="checkbox"/> 품명 <input type="checkbox"/> 수량 <input type="checkbox"/> 차량번호				
선택내용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를 삭제하려면, 위의 목록에서 해당내역을 선택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주민(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조회 <input type="checkbox"/> ※ *.- 없이 입력하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명 ※ 건수 ※ 공제세율 <input checked="" type="radio"/> 3/103 <input type="radio"/> 10/110(중고자동차) ※ 차량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량 ※ 취득금액 원 매입세액 공제액 원 차대번호 				

※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를 입력하려면, 위 항목을 입력한 후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십시오.				
입력내용추가				
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관련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관련 신고는 확정 신고시에만 작성하여, 과세표준영세서에 중고자동차 관련 업종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확정 신고시에만 작성				
⑥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 가능한 금액				
(단위: 원)				
매출액	매경분	화경분	합계	
대상액 한도계산	현도율	현도액		
당기매입액	영수증등	세금계산서	합계	
공제 가능한 금액				
⑦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단위: 원)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대상세액		
공제대상 세액	3/103			
이미 공제받은 세액	예정신고분	임명조기분	합계	
공제(납부)할 세액				

○ 경감·공제세액 작성하기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작성(전자신고세액 공제 등)

● 경감 · 공제세액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18)	작성하기	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19)	0	작성하기	0
합계	(20)	@	0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1)	작성하기	@	0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명세

•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구분	금액	세액	
전자신고 세액공제	확정신고에만 공제가능	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16년부터 폐지	작성하기	0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0	
대리납부세액공제		0	
현금영수증사업자 세액공제		0	
기타		0	
합계		0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을 납부할 세액의 99/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 과세표준명세 입력시 택시운송사업자경감세액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 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 건수 및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라 일정금액(국세청장이 현금영수증사업자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금액)을 "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세액"에 입력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입력완료**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작성

● 경감 · 공제세액

항목	금액	세율	세액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18)	작성하기	0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19)	0	작성하기	0
합계	(20)	@	0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20-1)	작성하기	@	0

※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그 밖의 경감 · 공제세액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 신용카드매출 등에 대한 공제세액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작성하기	0 원
전자화폐 매출금액	작성하기	0 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합계, 전자화폐결제명세서를 작성하면 공제금액에 자동 반영되어 금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0 원	
공제세액	0 원	
기공제세액	0 원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 가능한 사업자와 업종

1. 법인납세자 : 공제 불가능
2. 개인납세자 중 간이과세자 : 모든 업종 적용 가능
3. 개인납세자 중 일반과세자 :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행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적용 가능
 [단, 적전면도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억원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용 불가능]

※ 공제세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공제금액)의 1.3%이며, 공제한도는 납부한 세액 범위 안에서 연간 1000만원입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는 납부할세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매출 · 매입을 모두 입력한 후 작성하여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전 **입력완료**

○ 최종 납부(환급)세액 작성하기 및 신고서 작성완료

-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 신고서 작성 제출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환급세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 5천만원 미상인 경우 계좌개설 신고서 작성 제출** (단위:원)

거래은행 선택 계좌번호 ('-' 는 제외하고 입력하십시오)

● 면세사업 수입금액 (단위:원)

금액 0 **작성하기** ※ 면세매출액을 일률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계산서 받금 및 수취 명세

항목 금액

예산서 땅금금액	(82)	0	작성하기
예산서 수취금액	(83)	0	작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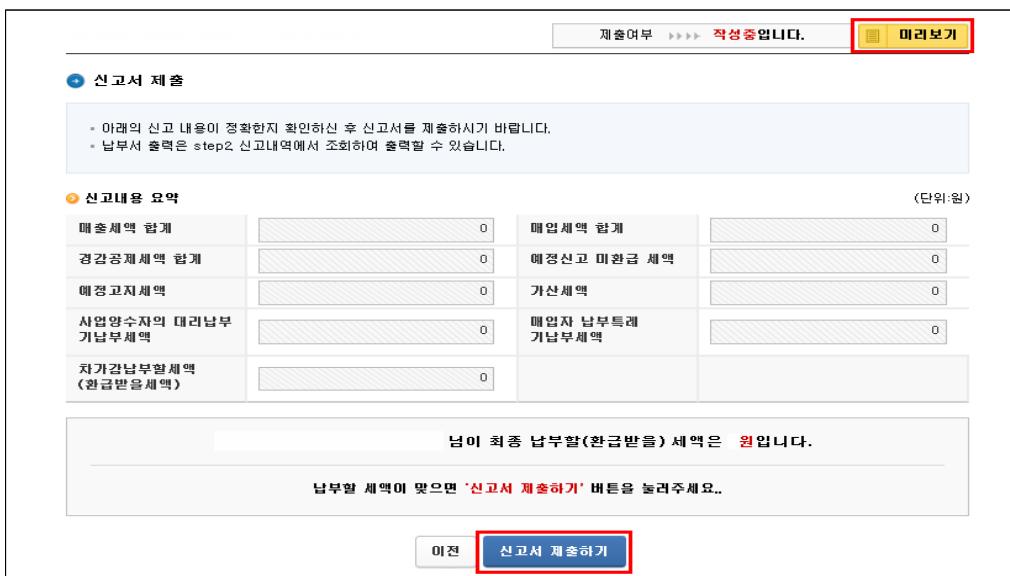
예전 **신고서 업로드완료**

● 최종 납부(환급) 세액 (단위:원)

항목	금액	세율	세액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21)	④	0
예정고지세액	(22)	④	0
사업장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3)	도율법	0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4)	도율법	0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25)	소회하기	0
가산세액계	(26)	뒷쪽으로	0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④-④-④-④-④-④)	실제 납부환급할 세액		0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환급받을 세액)			0

※ 신고대상기간 중에 예정고지로 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 예정고지세액이 부여되고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이 발생하여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보어줍니다.
 ※ 예정고지세액과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동시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신고서 제출화면



제출여부 >>> **작성중입니다.** 미리보기

● 신고서 제출

아래의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신 후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서 출력은 step2, 신고내역에서 조회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 요약 (단위:원)

매출세액 합계	0	매입세액 합계	0
경감공제세액 합계	0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0
예정고지세액	0	가산세액	0
사업장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0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0
차가감납부할세액 (환급받을세액)	0		

남이 최종 납부할(환급받을) 세액은 **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전 **신고서 제출하기**

○ 접수증 출력화면, 납부서 출력하러 가기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납제내역

메뉴열침
메뉴접기
제출여부 >>> 제출완료되었습니다.
미리보기

01. 일반과세
입력
02. 일반과세
변경
03. 과세표준
변경
04. 매입·경
매출
05.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사용자 ID	사용자명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결과	정상
접수번호		접수일시			

제출내역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신고서종류	부가가치세 확정(일반) 신고서	접수방법	인터넷(작성)
첨부한서류	신고구분	접수구분	정기(회계) / 정기신고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상세내역 (단위: 원) ▾

인쇄하기
Step2신고내역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닫기

○ 제출한 신고서 목록 보기, 납부서 출력하기

- 'Step2. 신고내역' 탭으로 이동하여 출력 가능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납제내역

· 항목값이 일부만 보일 경우 마우스를 항목값에 가까이 하거나, 항목값 경계에서 크기를 조절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하기] 후, 접수증(보기)을 선택하여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여부(첨부서류)]를 각각 선택하면 신고서원장, 제출서식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속서류제출여부]에서 PDF 형태로 신고 관련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에서 'Y'로 보여집니다.

· [부속서류제출여부]의 '(Y/N)'를 클릭하여 부속서류 제출내역을 확인하거나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기간 23시 30분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려면 [납부방법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시 1년 범위로 조회 가능합니다.

신고서 제출목록

신고일자	2020-07-01 ~ 2020-07-27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작성방법	전체	부서사용자ID	

조회하기

· 조회한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접수증 일괄조회, 출력 및 저장을 하려면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버튼을 클릭하세요.

· [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합니다.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총 1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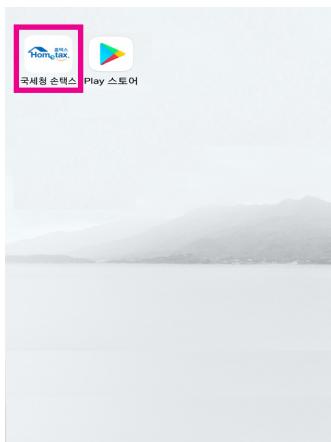
□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시	접수번호 (신고서보2) 첨부서류	접수여부 (신고서보2) 첨부서류	접수증 접수여부 (신고서보2) 첨부서류	납부서 접수여부 (신고서보2) 첨부서류	제출자 부속서류 ID 제출여부
<input type="checkbox"/>	2020년…	부가가…	정기…	정기…	영락…	101-01-20…	인터넷…	2020-0…	146-2…	접수(0건)	보기	ta…	



나. 홈택스(모바일)

1) 무실적 신고자

① 모바일홈택스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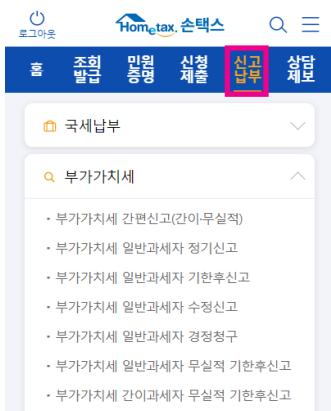
② 로그인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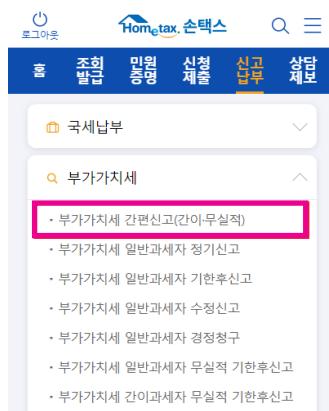
③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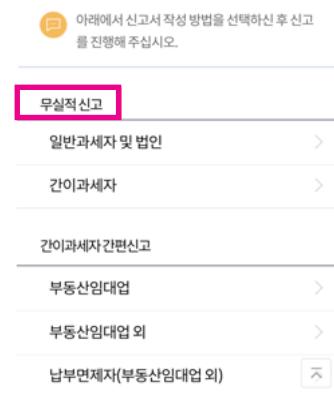
④ 세금신고/납부 터치



⑤ 부가가치세 간편신고 터치



⑥ 무실적신고



⑦ 신고서 작성·제출



⑧ 접수증 확인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 모바일 신고 가능 사업자가 모든 업종으로 확대
 - 단, 면세·영세율 해당 사업자, 재활용폐자원 공제 신고자,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 대상자,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자는 제외

손택스 로그인

손택스 통합 로그인

ID 비밀번호

아이디저장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회원가입 비회원로그인 로그인 설정

이용안내

-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손택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서비스는 일부 콘텐츠(이용안내/민원상 담 등)를 제외하고 로그인 후 이용 할수 있습니다.
- PC로 손택스에 접속하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입력서식 선택

② 입력서식 선택

③ 입력서식 선택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현금매출 명세서

기타매출분

과세표준명세

이전

자장 후 다음

부가세 일반 정기신고 선택

홈 조회
발급 미원
증명 신청
제출 신고
납부 상담
제보

국세납부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기한후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수정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무실적 기한후신고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무실적 기한후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부가가치세 상당도우미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매출 세금계산서

④ 신고내용(앞쪽) 3/1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	금액	세액
(1)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 분	0	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불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증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

[입력] 또는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매출처별명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세율: 10/100)

선택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선택	매수	공급가액
선택	세액	주류

선택삭제

입력

기본정보 입력

⑤ 기본정보 입력

새로 작성하기 신고서 불리오기

사업자

신고구분 년 예정 확정

신고대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업종코드 701201

업태 부동산업

종목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점포, 자가용)

이전

자장 후 다음

임대공급가액명세서[1]

⑥ 신고내용(앞쪽) 3/1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	금액	세액
(1)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 분	0	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불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4)과세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

기타 매출분

현금매출명세서

금액

작성하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금액

작성하기



임대공급가액명세서[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5/13

임대사업명세

[입력] 또는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임대사업명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선택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일자인 상호(성명)
	상세보기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선택삭제 [입력]

임대수입금액 합계

임대사업내용

보증금	원
월 임대료	원

임대수입금액(세부분)

합계	원
보증금 이자 (20)	원
월 임대료(계)	원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항목	금액	세액
(10)세금계산서 서수취증 일 반매입	0	0

작성

매입차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하기	

증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차별 세명세 작성

[입력] 또는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매입차별세명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선택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 1 >

선택삭제 [입력]

이전

저장 후 다음

전자신고세액공제 입력

신고내용(앞쪽) 3/12

경감·공제세액

항목	금액	세액
(18)부의 경감·공제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	

작성

(19)신용카드 매출증표등 발행공제 등

0	0
---	---

작성

(20) 합계

10,000	
--------	--

(20-1)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	0
----	---

최종 납부(환급)세액

항목	금액	세액
(27)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①+②+③+④+⑤+⑥+⑦)	0	
증설납부사업자기금부과 세액 (환급받을 세액)	0	

과세기타 매출분 입력

(4)과세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	0	0
----	---	---

기타매출분 7/13

기타 매출분

현금매출명세서

금액	0 원
----	-----

작성하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금액	204,590 원
----	-----------

작성하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작성한 보증금 이자 합계 204,590원을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포함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4)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

금액	204,590 원
세액(10/100)	20,459 원

이전

저장 후 다음

과세표준명세 작성

과세표준명세서

과세표준금액을 입증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세부분 및 배출세액을 작성하신 분은 하단 매입세액 작성 전 반드시 과세표준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0 원
----	-----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과세표준명세

아래 임력사항에서 인력한 금액의 합계는 이미 작성한 매출 금액의 합계 0원과 일치하여 합니다.

나의 업종코드 조회 (단위 : 원)

업종코드	금액
임대	세목
701201	코드 조회

부동산업 비주거용 긴임대업

합계 0

대부분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풍과물을 수취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기타(수입금액제외)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종의 간주임대료(보증금이자)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전

저장 후 다음

매입 신용카드[1]

(14)부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입)

작성	0	0
----	---	---

(15)합계 (10)+(11)+(12)+(13)+(14)

0	0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항목	금액	세액
(신용카드 매출증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0	0
(신용카드 매출증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 산매입	0	0
합계	0	0

이전

저장 후 다음

매입 신용카드[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5/12

도움말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기방점(공급자)과의 거래내역

입력 또는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거래내역 세명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력된 내용은 하단의 '그 밖의 신용카드 등'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단위 : 원)

일련번호	카드회원번호
공급처(기방점)사업자 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입력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선택삭제 [입력]

이전

저장 후 다음

최종 확인 후 신고서입력 완료

최종 납부(환급)세액

항목	금액	세액
(21)예정신고 미화분 세액	⑧	0
(22)예정고지 세액	⑨	0
(23)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⑩	0
(24)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⑪	0
(25)신용카드 업자의 대리 납부 기납부세액	⑫	0
(26)가산세액 계	⑬	0
(27)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①+②+③+④+⑤+⑥+⑦)	0	
증설납부사업자기금부과 세액 (환급받을 세액)	0	

이전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13/13

신고내용 요약

예금세액 합계	2,000,000
매입세액 합계	0
경감공제세액 합계	10,000
예정신고 미화분 세액	0
예정고지세액	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0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0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1,550,000
가산세액	0
차가감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440,000

이전

신고서 제출

3) 운수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손택스 로그인

손택스 통합 로그인

ID	비밀번호	로그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이디저장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회원가입	비회원로그인	로그인 설정

④ 이용안내

- 공동인증서 로그인은 손택스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서비스는 일부 콘텐츠(이용안내/민원상 담당)를 제외하고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PC로 톰екс에 접속하시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력서식 선택

② 입력서식 선택

④ 입력서식 선택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 현금매출 명세서
- 기타매출분
- 과세표준명세

이전 저장 후 다음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항목	금액	세액
(10)세금계산서 수수료(1월~6월)	0	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하기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입처별 명세 작성

[입력] 또는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매입처별명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주류

선택 합계 이전 저장 후 다음

부가세 일반 정기신고 선택

부가세 일반 정기신고 선택

국세납부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간편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기한후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수정신고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경정청구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무실적 기한후신고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무실적 기한후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

기본정보 입력

① 기본정보 입력

④ 기본정보 입력

새로 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사업자

신고구분

신고대상기간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자

업종코드

업태

종목

이전 저장 후 다음

매출 세금계산서

신고내용(합계) 3/12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항목	금액	세액
(1)과세 세금 계산서 발급 분	0	0

[작성]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

[입력] 또는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매출처별명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주류

선택 합계 이전 저장 후 다음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과세표준명세서

과세표준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기세액수 및 배출세액을 작성하신 분은 지난 매입세액 작성 전 반드시 과세표준명세서를 먼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금액

0 원

과세표준명세서 작성

과세표준명세

● 아래 인력서식에서 입력한 금액의 합계는 이미 작성한 매출금액의 합계 0 원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의 업종코드 조회 (단위 : 원)

업종코드 금액

업태 종목

701201 주류

부동산 임대업 미주거용 건물 임대업

합계 0 원

●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전기료, 수도료 등 물과 금을 수취하여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은 수입금액(수입금액과 외)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종의 간수입대표(보증금이자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이전 저장 후 다음

매입 신용카드(1)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입)

항목	금액	세액
(14)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입)	0	0

[작성]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명세

항목	금액	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	0	0

[작성]

항목	금액	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고정자 산매입	0	0

[작성]

항목	금액	세액
합계	0	0

선택 합계 이전 저장 후 다음

매입 신용카드(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 0/12

도움말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기방침(공급자)과의 거래내역

● 입력 또는 추가입력 버튼을 눌러 거래내역 명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입력된 내용은 하단의 '그 밖의 신용카드 등' 항목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일련번호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기방침)사업자 등록번호	거래건수
금액	세액

선택 합계 이전 저장 후 다음



전자세액공제 입력

③ 신고내용(앞쪽) 3/12 ✓

경감·공제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액
(18)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	
(19)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 등	0	0
(20) 합계	작성	② 10,000
(20-1)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	② 0

최종 납부(환급)세액

(단위: 원)		
항목	금액	세액
(21)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② 0	0
(22) 예정고지 세액	② 0	0
(23)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② 0	0
(24)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② 0	0
(25) 신용카드 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② 0	0
(26) 가산세액 계	작성	② 0
(27) 차기감하여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②-②-②-②-②-②-②+②)		0
총괄납부자감지가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0

최종 확인 후 신고서입력 완료

신고서 제출

③ 신고서 제출 13/13 ✓

신고내용 요약

(단위: 원)	
매출세액 합계	2,000,000
매입세액 합계	0
경감·공제세액 합계	10,000
예정신고 미환급 세액	0
예정고지세액	0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	0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	0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세액	1,550,000
기선세액	0
차기감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440,000

이전 신고서 제출

접수결과 확인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사용자 ID	
사용자명	
접수번호	
접수일시	
접수결과	정상
제출내역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신고서종류	부가가치세 확정(일반) 신고서
접수방법	모바일
첨부한서류	
신고구분	

국세청 흑ックス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다. 보이는 ARS 신고(☎ 1544-9944) 방법

- 무실적 사업자(음성 ARS도 신고순서는 동일함)

ARS 시스템 연동



전화를 거는 중...

1544-9944

녹음, 영상통화, 블루투스, 스마트, 내 소리 차단, 카페트

보이는 ARS 선택



국세청 ARS 신청 신고 센터입니다.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보이는 ARS (1) (2) 음성 ARS

3G, LTE 환경에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임대 신고 선택



국세청 ARS 신청 신고 센터입니다.
지금은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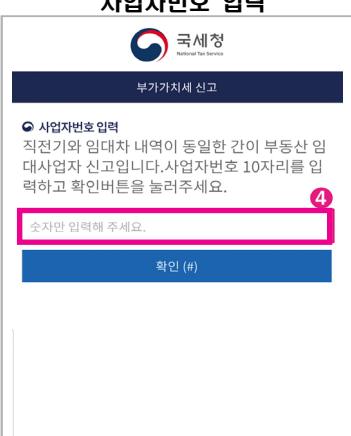
부가가치세 신고 (1) (2)

원하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무실적 신고 (3) (4)

부동산 임대 신고 (5) (6) (7)

사업자번호 입력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번호 입력
직전기와 임대차 내역이 동일한 간이 부동산 임대사업자 신고입니다. 사업자번호 10자리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4)

확인 (#)

인증번호 입력



부가가치세 신고

인증번호 입력
안내문에 기재된 인증번호 6자리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5)

확인 (#)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

인증되었습니다.
직전기와 동일한 임대차 내용으로 신고서가 작성됩니다. 다만, 직전기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으로 환산되어 계산됩니다. 임대차 내용이 변경된 경우 흠텍스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 (6) (7)

종료 (8)

신고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직전기와 동일한 임대차 내용으로 신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신고 내용

매출금액	36,900,000원
예정고지세액	0원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원
실제 납부할 세액	1,097,000원

납부방법

① 흠텍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결과조회에서 납부서를 출력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
② 흠텍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직접납부

신고서 제출 (7)

종료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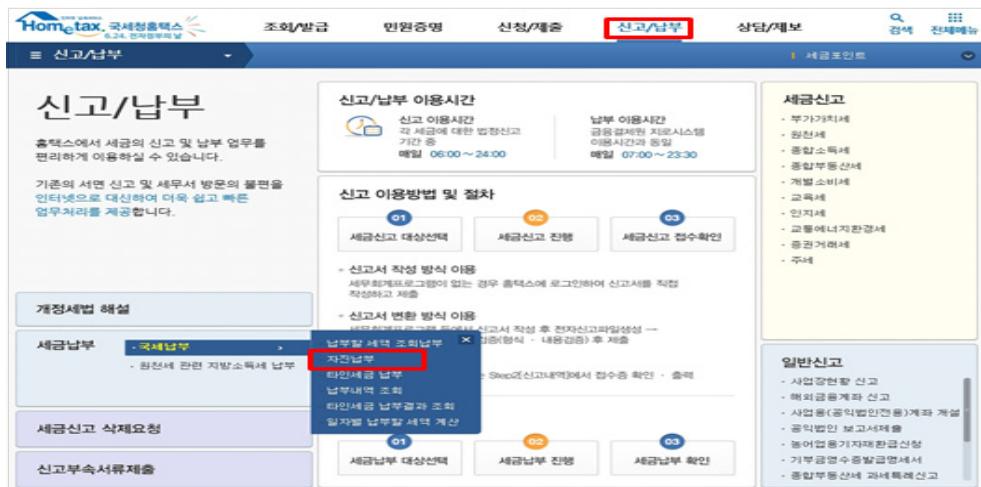
2 전자납부 요령

1)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서면신고한 후 납부만 홈택스로 전자납부 하는 경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 홈택스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를 클릭



○ 납부할 내용을 기재한 후 하단의 '납부하기'를 클릭



- ‘국세인터넷납부’(금융결제원사이트와 연결) 창이 뜨면, 결재수단을 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하고, 결재수단별 필요정보를 입력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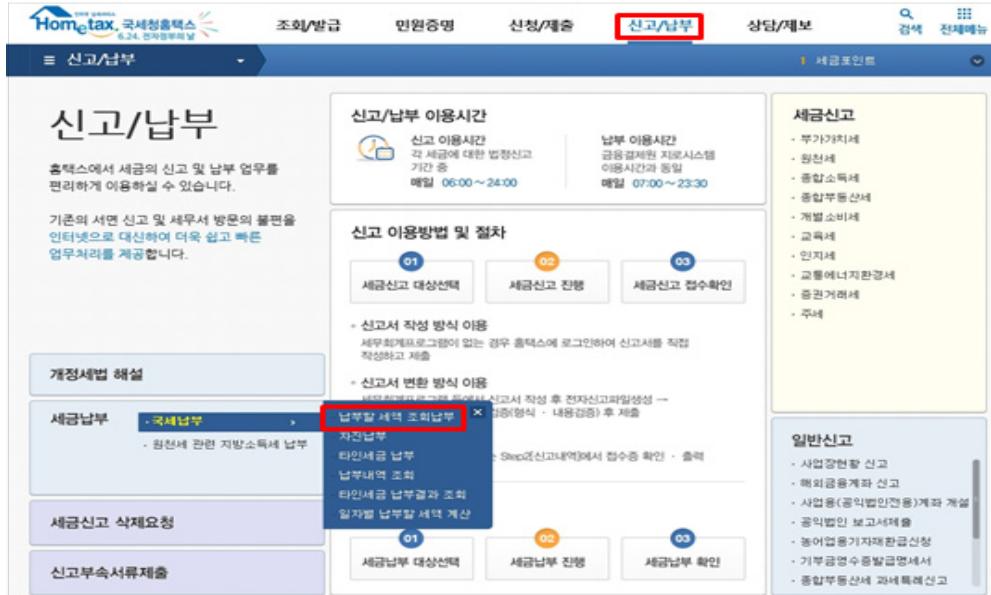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 실납부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명	은행 선택				
은행 선택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농협축협 우리은행 SC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서울은행 상상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신상태					
납부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긴급연락처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키보드로		민원 관리를 위하여 연락가능한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 납부가능 시간 안내		부하시기 바랍니다.(자동 입력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로 납부불가)			
● 금융기관별 납부시간 및 납부					
금융기관		납부시간	납부요금		
기업, 수협,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SC제일, 신한,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산림조합		매일 00:30~23:30	모든요금(일부요금 제외)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 납부카드 선택					
카드선택	카드선택하세요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			
	광주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씨티카드 비씨카드(우리카드 포함) KB국민카드 하나카드(구 이씨 포함) 슬기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NH카드 수협카드 롯데카드	서비스 행사 안내			
● 공지사항					2016.12.20 2018.05.17 2017.07.14 2017.07.10 2017.07.07 2017.07.05
■ 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					
■ 2018년 인터넷으로 주요납기일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 간편결제 선택					
간편결제 선택	간편결제 선택하세요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			
	페이코(PAYCO) KB국민앱카드 슬기앱카드 신한앱카드 현대앱카드 NH앱카드 롯데앱카드				
● 공지사항					2016.12.20 2018.05.17 2017.07.14 2017.07.10 2017.07.07 2017.07.05
■ 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					
■ 2018년 인터넷으로 주요납기일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 전자신고 후 홈택스로 전자납부 하는 경우

- 홈택스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를 클릭(공동인증서로 로그인)



- 전자신고한 내역이 나타나며, 해당 신고내역의 ‘납부하기’를 클릭



- ‘국세인터넷납부’(금융결제원사이트와 연결) 창이 뜨면, 결재수단을 선택(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하고, 결재수단별 필요정보를 입력한 후 ‘납부하기’를 클릭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 실납부자 주민(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명	은행 선택				
은행 선택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농협은행 농협축협 우리은행 SC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서울은행 상상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신상태					
납부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긴급연락처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키보드로		민원 관리를 위하여 연락가능한 휴대폰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별 납부가능 시간 안내		부하시기 바랍니다.(자동 입력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로 납부불가)			
● 금융기관별 납부시간 및 납부					
금융기관		납부시간	납부요금		
기업, 수협,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SC제일, 신한,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산림조합		매일 00:30~23:30	모든요금(일부요금 제외)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 납부카드 선택																
카드선택	카드선택하세요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														
	광주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전북은행카드 씨티카드 비씨카드(우리카드 포함) KB국민카드 하나카드(구 이씨 포함) 신한카드 현대카드 NH카드 수협카드 롯데카드	<table border="1"> <tr> <td>이스 행사 안내</td> <td>2016.12.20</td> </tr> <tr> <td>이스 행사 안내</td> <td>2018.05.17</td> </tr> <tr> <td>이스 행사 안내</td> <td>2017.07.14</td> </tr> <tr> <td>이스 행사 안내</td> <td>2017.07.10</td> </tr> <tr> <td>이스 행사 안내</td> <td>2017.07.07</td> </tr> <tr> <td>이스 행사 안내</td> <td>2017.07.05</td> </tr> </table>			이스 행사 안내	2016.12.20	이스 행사 안내	2018.05.17	이스 행사 안내	2017.07.14	이스 행사 안내	2017.07.10	이스 행사 안내	2017.07.07	이스 행사 안내	2017.07.05
이스 행사 안내	2016.12.20															
이스 행사 안내	2018.05.17															
이스 행사 안내	2017.07.14															
이스 행사 안내	2017.07.10															
이스 행사 안내	2017.07.07															
이스 행사 안내	2017.07.05															
● 공지사항																
■ 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																
■ 2018년 인터넷으로 주요납기일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납부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페이코 및 앱카드)						
■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부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부세액의 0.5% 추가부담)										
● 간편결제 선택										
간편결제 선택	간편결제 선택하세요	카드사별 이벤트 보기								
	페이코(PAYCO) KB국민앱카드 신한앱카드 현대앱카드 NH앱카드 롯데앱카드	<table border="1"> <tr> <td>2016.12.20</td> <td>2018.05.17</td> </tr> <tr> <td>2017.07.14</td> <td>2017.07.10</td> </tr> <tr> <td>2017.07.07</td> <td>2017.07.05</td> </tr> </table>			2016.12.20	2018.05.17	2017.07.14	2017.07.10	2017.07.07	2017.07.05
2016.12.20	2018.05.17									
2017.07.14	2017.07.10									
2017.07.07	2017.07.05									
● 공지사항										
■ 페이지 오류 발생 시 조치방법										
■ 2018년 인터넷으로 주요납기일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납부 방법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 (수정)2017년 7월 지방세·세외수입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 행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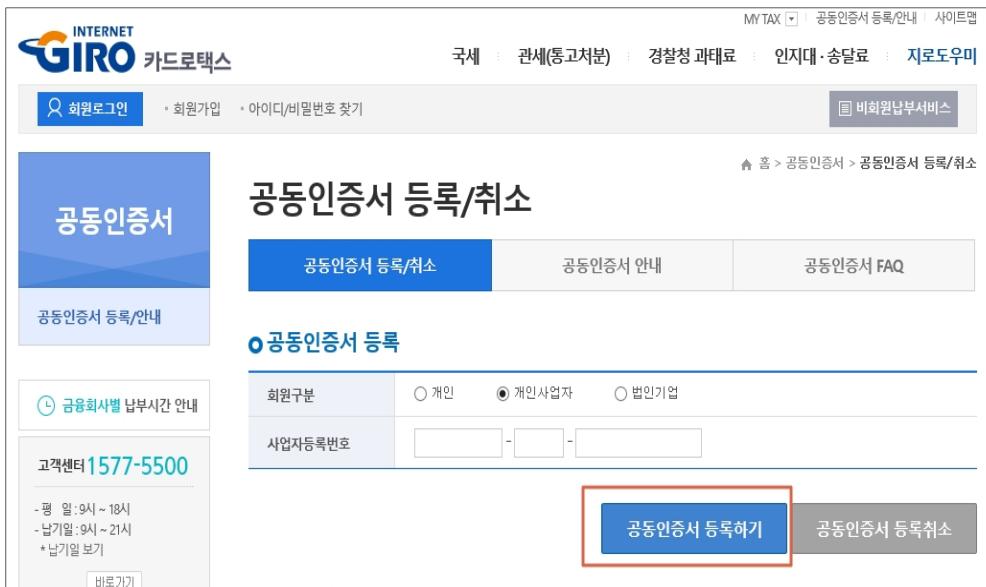
2)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이용 절차

- 금융결제원사이트(<http://www.cardrotax.kr>) 초기화면에서 공동인증서 등록 후
'국세' ⇒ '자진납부'를 클릭



※ 공동인증서 등록



○ 납부할 내용을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



조회납부
자진납부
연대납부

금융회사별 납부시간 안내
고객센터 1577-5500
- 월~일 9시 ~ 18시
- 납기일 9시 ~ 21시
* 납기일 보기
[바로 가기]

내 홍 > 국세 > 자진납부

자진납부

Step01
납부정보 입력

Step02
입력정보 확인 및 납부

Step03
납부결과 확인

회계연도: 2021년 | 일반회계 | 기획재정부 장관 | 조세

○ 납부번호

분류기호	납부년월	결정구분	세목
0126	21 06	1 확정분 자납	41 부가가치세

납세자명: (납부의무자명을 기입하십시오.)
납세자번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없이 입력하십시오.)

세입정수관서: 선택
세입정수관계번호: 180616

○ 납부 할 세금내역 (납부하실 세금만 입력하시면 합계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본세	10,000 원
교육세	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합계	10,000 원

확인

○ 결제수단 선택에서 ‘신용카드’를 선택

○ 납부 할 세금내역

본세	10,000 원
교육세	0 원
농어촌특별세	0 원
합계	10,000 원

* 결제수단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복합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세액의 0.5% 추가부담)



- 카드선택, 할부기간, 카드번호 등을 선택·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

● 납부카드 선택

* 카드선택	카드를 선택하세요 <input type="button" value="▼"/>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input type="button" value=""/>
* 할부기간	할부기간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 (5만원 미만은 할부불가)	
* 카드번호	[] - [] - [] - []	
* 유효기간	[] 월 [] 년 <2017년 1월인 경우 01/17로 입력>	
* 주민등록번호	[] - []	

확인

- 국세는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납부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못 납부하셨거나 이중출금 등이 발생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에 따라 카드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자가 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 납세액의 0.8%, 체크카드 : 납세액의 0.5% 추가부담)
- 실납부자 본인(회원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회원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 가능합니다.

* 납부대행수수료 0.8% (체크카드는 0.5%) 추가 부담

- 각 해당카드사의 카드결제 창을 통하여 카드결제

□ 계좌이체로 세금 납부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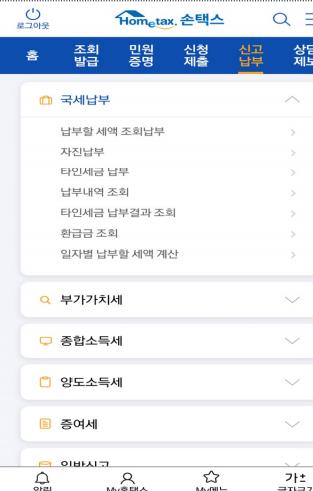
- 계좌이체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계좌이체 선택 후 납부계좌 번호, 계좌소유주 주민등록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납부하기 버튼 클릭

<input checked="" type="radio"/> 결제수단 선택 <input type="radio"/> 신용카드 <input checked="" type="radio"/> 계좌이체 <input type="radio"/> 복합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된 계좌가 없거나, 고객이 등록하신 금융회사 계좌는 납부 가능한 시간이 아닙니다. (현재 시간에 납부 가능한 금융회사의 계좌를 등록한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납부시간 안내는 지로도우미 > 이용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등록하기			
통신상태			
관리명			
납부계좌번호	<input type="text"/> * 로그인하신 회원 본인명의의 계좌만 납부 가능 납부시간		
계좌소유주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계좌비밀번호	<input type="text"/>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세는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납부취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못 납부하셨거나 이중출금 등이 발생된 경우 해당 기관을 통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의 수납여부는 계좌 출금여부에 따라 결정되으니 납부시도 후 오류가 발생하여 납부결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계좌의 출금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의 경우 해당은행 정책상 당좌예금 계좌는 국고금 납부가 불가합니다. 			
납부하기 취소			

3)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방법

- ‘모바일홈택스’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또는 ‘자진납부’를 터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① ‘세금신고/납부’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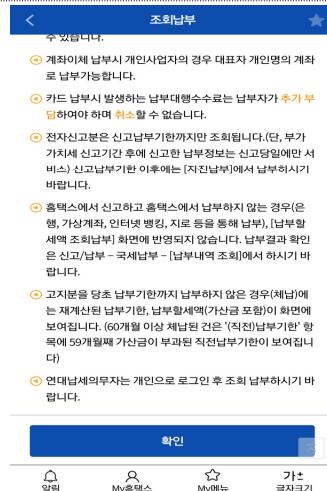
②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터치

조회납부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납부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로 납부가능합니다.
- 카드 납부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하며 **취소**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신고로는 신고납부기한까지만 조회됩니다.(단, 부가 가치세 신고기간 후에 신고한 납부정보는 신고당일에만 서비스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는 [자진납부]에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홈택스에서 납부하지 않은 경우(은행, 기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 등을 통한 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부결과 확인은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내역 조회]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고지문을 통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체납)에는 재계산된 납부기한, 납부할세액(기산금) 포함이 화면에 보여집니다.(60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직진'납부기한 항목에 59개월-기산금이 부과된 직전납부기한이 보여집니다)
- 연대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로그인 후 조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③ ‘납부하기’ 터치

조회납부

납부결과 반영에 10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총 건수 및 금액

납부할 건수	1 건
납부할 세액	528,800 원

납부할 세액 조회내역

관서명(관서코드)	납부기한
과세구분	전자납부번호
세목	납부할 세액

관명(235) 2019-12-31
정기신고 0126-1910-1-41-65530085
부가가치세 528,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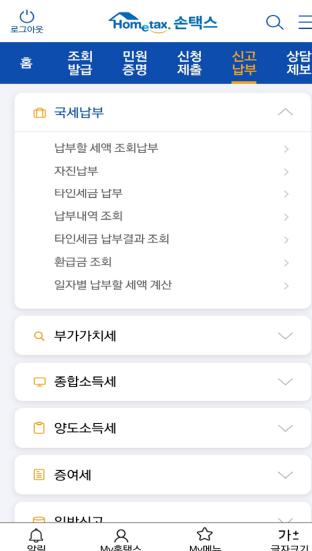
납부하기



- 스마트폰 홈택스 앱에서 미리 등록한 앱카드* 등을 이용하면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없이 간편하게 국세를 납부 가능

* 페이코 등 4개 간편 결제, 6개 앱카드사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① 신고/납부 화면



② 납부방법 선택

국세 납부

정보입력

계좌체
실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납부방법

간편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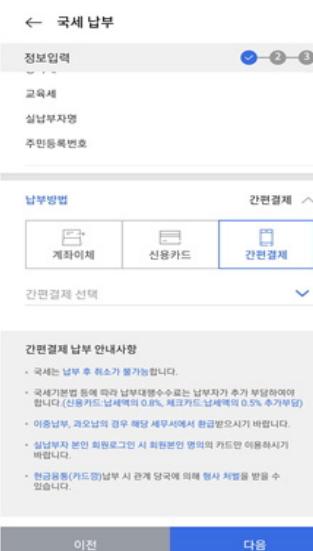
간편결제 선택

간편결제 납부 안내사항

- 국세는 납부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납세액의 0.8%, 체크카드·납세액의 0.5% 추가부담)
- 이동납부, 과오납부 경우 해당 세무서에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납부부자 본인 회원로그인 시 회원본인 명의의 카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현금용통(카드영)납부 시 관계 당국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다음



③ 간편결제 선택

국세 납부

정보입력

계좌체
실납부자명
주민등록번호

납부방법

간편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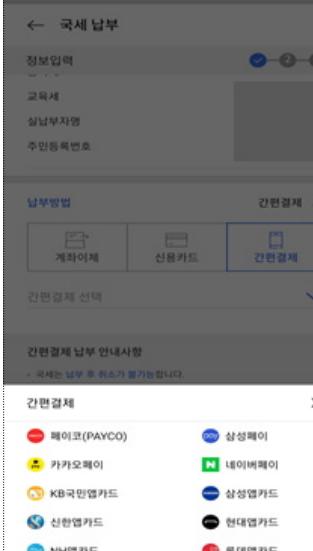
간편결제 선택

간편결제 납부 안내사항

- 국세는 납부 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간편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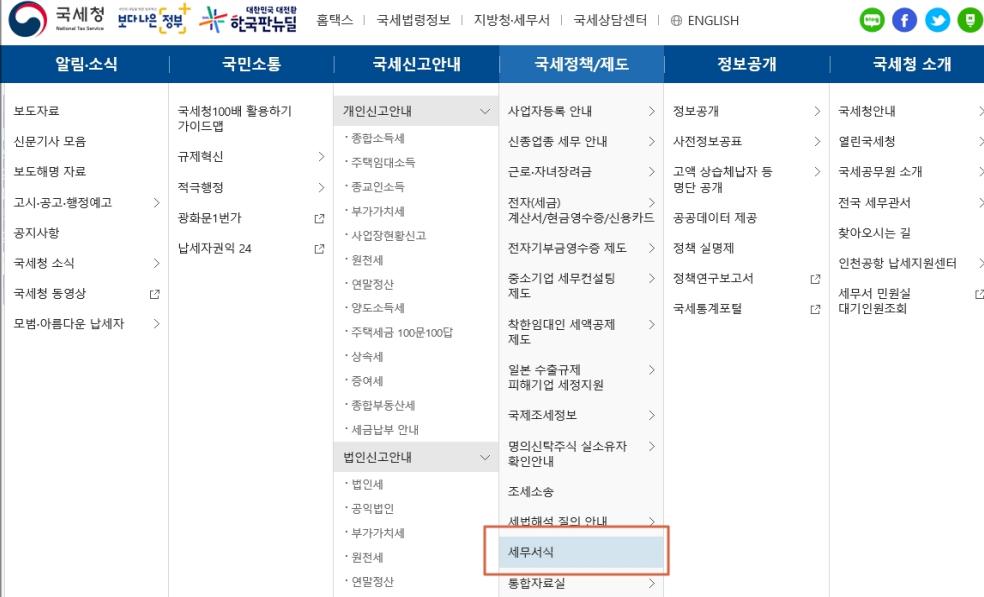
▶ 페이코(PAYCO) 삼성페이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 KB국민앱카드 삼성앱카드
▶ 신한앱카드 현대앱카드
▶ NH앱카드 롯데앱카드



4) 수동납부서를 출력하여 납부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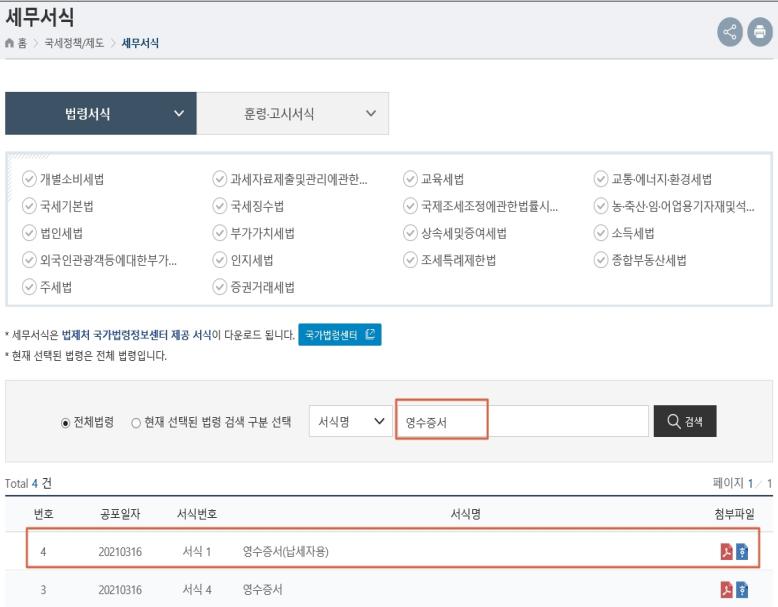
□ 수동 납부서 서식 출력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국세정보’ ⇒ ‘세무서식’을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NTS homepage with the 'Tax Information' (국세정보) section expanded. Under 'Tax Form' (세무서식), the 'Tax Form for Declaration' (세무서식) link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Other visible links in this section include 'Tax Form for Payment' (납부서식), 'Tax Form for Audit' (검증서식), and 'Tax Form for Audit' (검증서식).

- ‘영수증서’ 또는 ‘납부서’로 검색하여 납부서 서식 선택



The screenshot shows the 'Tax Form' (세무서식) search results page. The search bar at the top contains '법령서식' (Legal Document) and '훈령·고시서식'. The search results table has columns for '선택' (Select), '법령서식' (Legal Document), and '세무서식' (Tax Form). The row for '영수증서' (Receipt)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table also includes columns for '선택' (Select), '선택' (Select), and '선택' (Select).

□ 흠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납부서 출력하는 방법

○ 접수증 출력화면에서 'Step2.신고내역' 클릭

부가가치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신제내역

메뉴검색 메뉴검색 | 제출여부 >>> 제출완료되었습니다. | 미리보기

01. 일반과세입력 02. 일반과세입력 03. 과세표준 04. 매입·경

08.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HomeTax, 국세청홈택스

사용자 ID 사용자명 접수번호 접수일자 접수결과 정상

상호(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신고서종류 부가가치세 확정(일반) 신고서 접수방법 인터넷(작성)
첨부한서류 신고구분 정기(확정) / 정기신고

국세청홈택스에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

상세내역 (단위: 원)

인쇄하기 Step2신고내역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닫기

○ 'Step2. 신고내역' 화면에서 해당신고내역의 납부서를 출력

HomeTax,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Step 1. 세금신고 Step 2. 신고내역 Step 3. 신제내역

· 항목값이 일부만 보일 경우 마우스를 항목값에 가져와 하거나, 항목값 경계에서 크기를 조절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하기] 후, 접수번호(□)을 선택하여 접수증에 표시된 내용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된 목록에서 [접수번호], [접수여부(납부서류)]를 각각 선택하면 신고서현장, 제출서식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속서류제출여부]에서 PDF 형태로 신고 과정 부속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속서류제출여부]에서 'Y'로 보여집니다.
 · [부속서류제출여부]의 'Y/N'을 클릭하여 부속서류 제출내역을 확인하거나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후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기한 24시 30분 깨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려면 [납부방법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제출목록

· 신고일자: 2024-01-01 ~ 2024-01-31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조회하기
 작성방법: 현재 | 납부서 사용자 ID: |

· 조회한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신고서의 접수증 일괄조회, 출력 및 저장을 하려면 [접수증 일괄조회 및 인쇄] 버튼을 클릭하세요.
 · [제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합니다.

● 1건의 신고내역이 있습니다.

10 건 | 표면

과세연월	신고서 종류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서번호) / 접수여부 (신고서보기) / 접부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고구분 신고유형	상호 (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접수방법	접수일자	접수번호 (신고서번호) / 접수여부 (신고서보기) / 접부서류	접수증 납부서	제출자 ID	부속서류 제출여부	

□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가상계좌를 조회하는 방법

- 신고서 접수증에서 ‘납부서 조회(가상계좌확인)’ 클릭

○ 납부서 팝업창에서 가상계좌번호 확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영수증서(납세자용)

(1면)

납부번호 (전자납부번호: 01126-3106-1-011-000000000000)					수입징수관서		
분류기호	납부연월	납부구분	세 목	발행번호	세무서명	서코드	계좌번호
0126	21.06	1	41	000000000000	부천세무서	130	100248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30-26-100000	회계연도	2021	
사업장 (주소)	부천시 부천로 180, 4층 1003호 (부기: 부천시 부천로 1003호)			일반회계	기획재정부소관	조세	
연도/기분	2021년 1기분						
세목명	납부금액						
부가가치세	2,299,750						
교육/방위세	0						
농어촌특별세	0						
가산금	0						
계	3,328,500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2021년 07월 26일							
기상계좌 (23:00 까지 납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2021.07.26 (예약이체불가)			
국세계좌 010-2611-0000-1-011-000000000000				기업 000-0000-0000-0000-0000-0			
KEB하나 101-08087-0010-0000-0000-0				신한 542-1025-1059-2117			
국민 001-1026-1000-11-0				우리 101-0000-0000-0000-0000-0			

년 월 일

은행
우체국
동

지점

수납인

※ 이 납부서는 FAX로 전송하거나 복사하시면 자동화기기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 신고 접종기간에는 가상계좌 조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납부서 출력일: 2021년 06월 04일

○ (참고)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코드	세무서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코드	세무서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코드	세무서계좌번호
강남	211	180616	동화성	151	027684	역삼	220	181822
강동	212	180629	마산	608	140672	연수	150	027300
강릉	226	150154	마포	105	011840	영덕	507	170189
강서	109	012027	목포	411	050144	영동	302	090311
거창	611	950419	반포	114	180645	영월	225	150183
경산	515	042330	보령	313	930154	영주	512	910378
경주	505	170176	부천	130	110246	영등포	107	011934
경기광주	233	023744	부산진	605	030520	예산	311	930167
고양	128	012014	북광주	409	060671	용산	106	011947
공주	307	080460	북대구	504	040772	용인	142	002846
관악	145	024675	북대전	318	023773	울산	610	160021
광명	235	025195	부부산	606	030533	원주	224	100269
광산	419	027313	북인천	122	110233	은평	147	026165
광주	408	060639	북전주	418	002862	의정부	127	900142
구로	113	011756	분당	144	018364	이천	126	130378
구리	149	027290	삼성	120	181149	의산	403	070425
구미	513	905244	삼척	222	150167	인천	121	110259
군산	401	070399	상주	511	905260	잠실	230	019868
금정	621	031794	서산	316	000602	전주	402	070438
금천	119	014371	서초	214	180658	정읍	404	070441
기흥	236	026178	서광주	410	060655	제주	616	120171
김천	510	905257	서대구	503	040798	제천	304	090324
김포	234	023760	서대문	110	011879	종로	101	011976
김해	615	000178	서대전	314	081197	중랑	146	025454
나주	412	060642	서부산	603	030546	중부	201	011989
남원	407	070412	서인천	137	111025	중부산	602	030562
남대구	514	040730	성남	129	130349	진주	613	950435
남대문	104	011785	성동	206	011905	창원	609	140669
남부천	152	027685	성북	209	011918	천안	312	935188
남양주	132	012302	세종	320	025467	청주	301	090337
남인천	131	110424	속초	227	150170	춘천	221	100272
노원	217	001562	송파	215	180661	종주	303	090340
논산	308	080473	수성	516	026181	통영	612	140708
대전	305	080486	수영	617	030478	파주	141	001575
도봉	210	011811	수원	124	130352	평택	125	130381
동래	607	030481	순천	416	920300	포천	231	019871
동작	108	000181	시흥	140	001588	포항	506	170192
동고양	232	023757	아산	319	024688	해남	415	050157
동대구	502	040769	안동	508	910365	해운대	623	025470
동대문	204	011824	안산	134	131076	홍성	310	930170
동수원	135	131157	안양	123	130365	홍천	223	100285
동안양	138	001591	양산	624	026194	화성	143	018351
동울산	620	001601	양천	117	012878			
동청주	317	002859	여수	417	920313			



자주 찾는 문답사례

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3. 전자신고 관련 문의
4. 전자납부 관련 문의

1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2.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3.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중 현금매출 명세서란에 기재할 사항은 ?

☞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과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내역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

☞ '21.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1.2%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 간주임대료 계산식 >

-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frac{\text{과세대상기간의 일수}}{365\text{일}}$
 - 윤년에는 366일을 적용
 - '21.1기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1일(1~6월)
- ◆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총당한 경우 총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5. 부동산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범위는 ?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 방법은 ?

☞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임대수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7. 수출기업 수입분 납부유예(10-1) 란에 기재하는 사항은 ?

☞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 수출 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자료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자금부담 완화(유예기간:1년)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것
 -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3. 관할세무서장에게 충족요건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 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 나. 최근 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 다.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라. 최근 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 없을 것

◆ 적용방법 : 납부유예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

◆ 적용시기 : '21.2.17.이후 납부유예 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 ① 세무서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인 요청
- ② 세관장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세무서 확인서 제출)
- ③ 세관장 납부유예 승인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 ④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 납부유예액

8.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

☞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6)번에 기재되는 사항]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1,000cc 이하 경차 제외)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 면세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

9. 사업자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감세액의 종류는 ?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4)번에 기재되는 사항]

-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123page 참고)
- ◆ 의제매입세액 공제(119page 참고)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통장소는 2/102
 - 음식점업 중 개인은 8/108 (과세표준 2억원(일반사업자) 이하는 9/109), 법인은 6/106
 - 제조업 중 중소기업(조특령 §5①) · 개인은 4/104, 법인은 2/102
-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 : 6/106)

- ◆ 재 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120page 참고) : 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 10/110)
-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시)
- ◆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그 밖의 기타경감·공제세액 등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8), (19)번에 기재되는 사항]

- ◆ 전자신고세액공제(121page 참고) : **1만원**
 - 세무사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연간 750만원 한도
- ◆ 택시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납부세액의 99/100
-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123page 참고)
 - : 발행금액의 13/1,000(음식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6/1,000)
 -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개인 :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11. 의제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통 장소 : 2/102
-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 8/108(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9/109)
 -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9/109 적용
- 제조업 중 조특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 4/104
 - *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적용

◆ 간이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음식점 중 과세유통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2/102
- 음식점(과세유통장소 제외) 사업자 : 8/108(과세표준 4억 이하인 경우 9/109)
- 제조업 사업자 : 6/106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제

◆ 공제한도 설정

구분	개인 일반사업자		간이 과세자	법인 사업자
	반기매출액 2억 초과	반기매출액 2억 이하		
공제 한도	반기매출액의 45%	반기매출액의 55%	제외	반기매출액의 40%

구분	개인 음식업자		
	반기매출액 2억 초과	반기매출액 1억 초과 2억 이하	반기매출액 1억이하
공제 한도	반기매출액의 50%	반기매출액의 60%	반기매출액의 65%

☞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2.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

- 재활용폐자원
 - 계산식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times \frac{3}{103}$
 - 공제한도
해당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times \frac{80}{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
 - *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하여 정산함
 - 적용대상 품목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류,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 계산식 :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times \frac{10}{110}$
 - 중고자동차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13. 전자신고와 관련한 세액공제는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세금계산서 등 수취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하는 경우]

◆ 직전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 공제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2만원)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 : 세무사 ⇒ 연간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 연간 750만원

14.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 대손세액공제 제도 >

- ❖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
- ❖ (대손세액 계산) 대손금액(부가세포함) × $\frac{10}{110}$
- ❖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 * '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 (대손 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 및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금금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30만원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15.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사업자 (개인, 연간 1,000만원 한도)

- 영수증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 한 경우 발행 금액(부가세포함)의 1.3%를 납부 세액에서 공제(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
-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 (단, '21.12.31.까지는 1.3%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및 행정사업(사업자 공급분 제외) 등

◆ 수령사업자

-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가액) × 10%
-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부분터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공급대가) × 0.5%를 적용

16.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요?

☞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1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거래가 아니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18.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

☞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단,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부가령 §88⑤)]

☞ 흠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되니,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 받을 수 없습니다.(부가법 §33)

19.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받았는데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126)나 「국세청 흠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20.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 ☞ 국세청 흠택스 「My홈택스」 - 부가가치세 - 「세금신고내역」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1.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 작성 시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

- ☞ 국세청 흠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으며,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 다만, 종업원 명의(법인, 개인사업자 모두)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 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함

22. 예정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

- ☞ 국세청 흠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 ☞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흠택스 세무대리인/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 「부가 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임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23.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

-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 ❖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24.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할 경우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 ☞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문의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조회 방법은 ?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동인증서 로그인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보안카드가 있는 경우 : 아이디 로그인

2.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

☞ 사업자가 홈택스 상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방법]

- ① 홈택스를 통한 수임업체 등록 후 동의
 - 세무대리인이 수임업체 등록 후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② 온라인 수임 동의가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수동으로 제출 후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 * 신고대리의 경우 부가세 신고기간에만 신청 가능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발급목록조회]에서 [수임사업자 전환] 클릭 → 수임업체를 선택한 후 [확인] →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조회

3.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기준은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는 2021.7.13.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만을 기재하고 개별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위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2021.7.14.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개별 명세를 작성합니다.

※ 전자적 방식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일지라도 「홈택스」에 전송하지 않거나, 2021.7.14. 이후에 전송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홈택스」→[조회/발급]→[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통계조회]→[부가세신고용 합계표 조회]에서 조회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합계표 작성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해야 하는지 ?

☞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는 ?

☞ 법인사업자는 2011.1.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으며 2014.7.1.부터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20년 공급가액(면세분 포함)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의무발급기간 : '21.7.1 ~ '22.6.30

6. '21.6.25.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21.8.15. 일부 반품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 환입이 된 경우 공급시기는 환입된 날이므로 작성일자는 '21.8.15.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공급시기는 '21.8월 이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며 '21.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7.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는?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9.1.1. 이후 거래분)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 하지 않은 경우	2%	매입 세액 불공제*
	지연 발급	▪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종이 발급	▪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전송	지연 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 (예) '20.10.5. 발급한 경우 '21.1.25.까지 전송	0.3%	해당없음
	미전송	▪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 (예) '20.10.5. 발급한 경우 '21.1.25.까지 미전송	0.5%	

* 2019.2.12.이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부가령 §75조⑦항)

- 단,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 0.5%부과

8.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은?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 발급일 다음 날까지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전송마감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급 즉시 전송해야** 전송과정에서의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세)이 없습니다.

9.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 ☞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흠택스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매입자는 흠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0.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삭제나 정정 가능 여부?

- ☞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 단,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

11.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과정에서 오류로 반송된 경우?

- ☞ 표준규격*에 맞지 않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반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 내에 재발급 하여야 하며, 발급·전송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검증하기 위해 거래항목·전송방식 등을 표준화하여 규정

12.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 폐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일 이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폐업일이 속한 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나, 수정세금계산서는 폐업일 이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3 전자신고 관련 문의

1. 국세청 흠택스 가입은 어떻게 하는지 ?

☞ 흠택스 가입은 인터넷에서 본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가입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흠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개인 또는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중)

- 전자납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 회원유형을 개인으로 선택한 경우 공공아이핀(I-PIN)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로도 회원가입한 경우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보안카드 또는 공동인증서(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가 필요합니다.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으로 가입하는 방법]

- 국세청 흠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회원가입
 ⇒ 「회원 유형 선택」에서 사업자·세무대리인 선택
 ⇒ 「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여 가입
 ⇒ 본인인증수단 선택(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세무서를 방문하여 가입하는 방법]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여 「흡택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 제출
 - * 세무서 방문시 구비서류 (법인은 신청서상에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본인(법인은 대표자)의 경우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 신청서, 위임장(신청서 하단), 위임자의 신분증(법인은 법인인감증명),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

2. 전자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 사업자는 누구나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한번의 로그인으로 세금신고·민원증명 발급·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회 등 모든 국세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 홈택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3. 사업장이 여러 개(법인 본점, 지점)인데 홈택스 가입은 각각 해야 하는지 ?

-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번호로 관리되므로 한번만 가입하면 모든 사업장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관리되므로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 * 단, 부가가치세는 본점에서 홈택스를 가입한 경우 본점의 홈택스 ID로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 홈택스 ID 또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는 ?

☞ 홈택스 - 로그인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다만, 비밀번호의 경우 회원가입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로 새로운 비밀번호가 전송되므로, 휴대번호 및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세무서로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 · 제출해야 함

[ID / 비밀번호 확인 방법]

-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중앙상단 - 로그인을 클릭하고 좌측 하단에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클릭하면 '사용자 아이디(ID) 찾기', '휴대전화/이메일로 비밀번호 변경', '지문/인증서로 비밀번호 변경' 화면이 나옴
- 사용자 아이디(ID) 찾기
 - 개인, 개인사업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사업자(개인/법인)는 사업자등록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아이디찾기」 클릭하면 아이디의 「일부」를 보여줌 (개인정보 보호 차원)
- 휴대전화/이메일로 비밀번호 변경
 -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하고 사용자 유형별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전송방법을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 재발급 받기」를 클릭하면 신규비밀번호가 전송됨
 - *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이메일과 휴대전화번호가 바뀐 경우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 후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 정보로 인증을 통해 재발급 가능(사업자는 이용불가)
 - * 전송된 비밀번호는 기존의 비밀번호가 아닌 임시로 부여된 비밀번호이므로 원하시는 비밀번호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
- 공동인증서가 있는 경우 :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회원정보 조회/수정

5.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

- ☞ 전자신고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하여 사업자유형(일반, 간이)에 따라 해당 신고서 작성하기로 들어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 (작성방법) 홈택스 처음화면 ⇒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따라하기' 참고

6. 전자신고 이용시간은 ?

- ☞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전자신고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7월 부가세 신고의 경우 7.1.~7.25.까지는 매일 06:00부터 다음날 01:00까지, 이용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신고마감일인 7.26.은 06:00부터 24:00까지 운영

7. 전자신고를 한 후 정정사항 또는 오류사항이 발생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지 ?

- ☞ 신고서 등을 전자신고로 전송한 이후 신고내용의 오류 또는 정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신고서 재전송의 경우 정기신고는 신고마감일,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는 신고당일까지 가능

8. 신고방법을 잘 몰라 전자신고도 하고, 서면신고서도 제출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전자신고 후 제출한 서면신고 내용과 전자신고 내용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을 납세자로부터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전자신고가 잘못되어 전자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에 의하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흠택스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세금신고 삭제요청」 메뉴

9. 이전에 전자 신고한 신고서를 조회하는 방법은 ?

☞ 흠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 결과조회'를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15.2.23.일 이후 전자신고분만 조회됨(서면신고 제외)

* My흡택스의 [세금신고내역]은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모두 조회 가능하나, 국세청 직원의 확인절차 (약 1달 소요)후에 조회되며, 세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10. 매출·매입 등 신고할 실적이 없는데 쉽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

- ☞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에 들어가서 사업자등록 번호를 조회하고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무실적 전자신고 경로 요약]

- ① 홈택스 전자신고
 - (일반과세자)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 (간이과세자)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확정/예정) ⇒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하단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 클릭
- ② 모바일홈택스 전자신고
 - 모바일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간편신고 ⇒ 무실적 신고
- ③ 보이는 ARS ☎ 1544-9944로 전화
 - 보이는 ARS 선택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신고' ⇒ 사업자번호 입력 ⇒ 주민등록 번호 입력 ⇒ 신고서작성 ⇒ 신고서 제출

11. 제출한 신고서와 납부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 ☞ Step2. 신고내역에서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미리보기에서 신고서 출력 가능 하며, 납부서를 클릭하면 납부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12. '새로 작성하기'와 '불러오기' 버튼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요?

- ☞ (새로 작성하기) 작성 중인 신고서를 삭제할 때 사용합니다.
- ☞ (불러오기) 작성중인 신고서를 불러오기 할 때 사용합니다.

13. 전자신고시 오류메시지 처리방법 ?

- ☞ 국세상담센터 ☎126(1번→3번) 이용하여 문의

* 세법상담은 ☎126(2번)이며, 전화통화량이 많으면 세무서로 자동 연결됩니다.

14. 기한후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한지 ?

- ☞ 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통하여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15. ‘조기환급대상자가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 ☞ 시설투자 환급일 경우 서식 선택화면에서 ‘건물등 감가상각 자산취득 명세서’를 선택한 후 왼쪽 메뉴 ‘04. 매입.경감공제세액’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하거나 신고서 화면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서식을 작성합니다.
- ☞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총괄납부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이 ‘0’으로 표시되어 해당 오류가 발생합니다.

16. 부동산임대업일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 ☞ 흠택스 전자신고의 입력서식화면에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서식선택 후
‘저장후 다음이동’ 클릭 → 신고내용 앞쪽화면에서 ‘과세 기타(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작성하기 클릭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하기

17.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일 경우 '현금매출명세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 왼쪽 메뉴 '03.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서' 화면에서 해당 서식을 선택하거나 '과세 기타'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8. 신용카드 매출 자료 조회 내역이 실제 매출과 다르게 나옵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요?

☞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내역은 각 금융기관에서 여신금융협회로 보내준 내역을 제공하는 자료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로 금융기관의 내역이 전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하시고 상세 내역은 각 금융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 '과세표준 금액 오류'가 발생합니다.

☞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시 과세표준명세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이며, '과세표준명세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 (서식선택) '입력서식선택'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를 체크

20.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 매입에 입력하려고 하는데, 일반 매입에 입력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을 클릭하여 고정자산 매입을 포함한 모든 세금계산서 매입금액을 입력한 뒤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매입'을 클릭하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을 입력하면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매입'란에 분리·입력됩니다.

2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메뉴의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신용카드 우측의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조회되는 금액은 모두 공제 가능한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조회되는 금액은 발급받은 금액의 합계(간이·면세사업자 매입분 등 당연 불공제금액 제외)로서,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이 있는 경우 주의하여야 하며, 공제할 금액만 거래건수·공급가액·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공제/불공제 변경 방법]

- (현금영수증)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세액공제 확인/변경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화물운전자복지카드 - 매입 세액공제 확인/변경
- (사업용신용카드) 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매입세액공제 확인/변경

22. 중고자동차 업종인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에 공제율이 3/103으로 나와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매출세액을 먼저 작성한 후 과세표준명세를 작성하면 재활용폐자원 서식에서 공제 10/110으로 자동 선택됩니다.

23. 사업자단위과세 작성 완료 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자는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사업자단위과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 작성하기 좌측의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 메뉴를 클릭하여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출/매입내역을 작성하면 됩니다.

24.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에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 현황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 음식점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력서식선택' 화면의 '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에서 '사업장 현황명세서'를 선택하고, 신고서작성하기 좌측의 '06.기타제출서류(영세율제외)' 메뉴를 클릭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25. 거래처로부터 ‘계산서’를 받은 내역은 어디에 기재하나요?

- ☞ 신고내용(앞쪽) 화면의 제일 하단에 있는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의 ‘계산서 수취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 * 계산서 발급 내역은 ‘계산서 발급금액’ 우측 ‘작성하기’를 클릭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만약 작성하기 버튼이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전 화면의 ‘입력서식선택’ 화면에서 기타 제출서류(영세율제외)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체크하신 후 입력할 수 있습니다.

26. 부가가치세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란 ?

- ☞ 사업자가 본인의 휴대폰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하여 본인 확인만으로 간편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일반과세자] 무실적 신고, 업종과 상관없이 정기신고, 기한후신고, 수정신고·경정청구 가능
[간이과세자] 무실적신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외(단일업종 매출액만 있는 사업자), 납부면제자 간편신고 가능
단, 음식·숙박업, 면세·영세율 해당 사업자, 재활용폐자원 공제신고자,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대상자는 제외되며, 수정·경정청구는 모바일로 제출된 신고서만 가능

27.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신고일이 아님에 유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환급세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변경)신고서(통장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8. 홈택스 간편인증 로그인

☞ 홈택스는 민간인증서(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 페이코)를 통해 간편인증 로그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간편인증은 주민등록번호로만 로그인할 수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시 사업장선택 후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납부 등 일부 서비스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로그인 버튼 선택 > 간편인증(민간인증서) 탭 선택

⇒ 간편인증 버튼 선택

⇒ 민간인증 사업자를 선택한 후 모바일 기기에서 지문, PIN번호 등으로 전자서명 비밀번호 입력

29. 홈택스 로그인 오류 조치방법

☞ 홈택스 로그인시 오류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그인 화면의 '로그인안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 개인으로 로그인 후 사업자전환이 안되는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사용하는 경우)
 - '도구 > 호환성보기 설정 > 이 웹사이트 추가'에 홈택스 추가
 -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탭'에서 '모든영역을 기본 수준으로 다시 설정'을 선택

[공동증서·금융인증서 로그인]

- 인증서 이용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인증서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인증서 인지 확인하신 후 등록하기 바랍니다.'
⇒ 홈택스에 인증서를 등록하지 않고 로그인 하는 경우 나타나는 메시지로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홈택스에 등록되어야 이용 가능
- 공동인증서 선택창은 나오는데 로딩현상으로 로그인 불가한 경우
⇒ 홈택스 화면 하단 '통합설치프로그램'에 가서 '공동인증서(MAGIC-PKI)' 재설치

4 전자납부 관련 문의

1. 부가가치세를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 흠택스 및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흠택스에서 전자납부를 하는 방법]

- 공동인증서로 흠택스를 로그인하여 금융결제원을 통한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 뱅킹이 가능한 계좌에서 계좌이체하는 방식)
- [타인세금 납부]를 이용하여 타인계좌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를 대리로 납부하는 자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은행의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

- 본인이 이용하는 은행 사이트로 로그인하여 국세납부에서 자진납부를 선택하여 세목 (부가가치세), 납부구분(확정분 자납), 납부금액을 작성하여 국세를 납부합니다.

2.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

☞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습니다.

365일	00:30~23:30	기업, 수협, 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신한, KEB하나, SC제일,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새마을, 산림조합, 한국씨티
	07:00~23:30	산업, 국민, 우리,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

*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흠택스는 07:00부터 23:30까지 납부 가능

3. 간이과세자가 모바일 전자신고 후 세금이 나오면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금융결제원의 '모바일지로' 앱과 연계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납부하거나,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 또는 금융기관에 현금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필요)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는 당해 납부기한까지만 가능하며,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자진납부」를 이용해야 함

[전자신고분 전자납부]

- 홈택스서비스 로그인(공동인증서)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납부할 세액확인(세액수정가능) ⇒ 납부하기 ⇒ 금융결제원 지로화면 ⇒ 은행/계좌번호/비밀번호 입력 ⇒ 납부하기 ⇒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 확인

[납부확인]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내역 조회

5. 서면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는 방법은 ?

☞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메뉴에서 「자진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 자진납부는 본인이 세목, 세액, 결정구분 등을 모두 선택해야 합니다.
* '21.1기 확정신고의 경우 : 세목(부가가치세), 납부구분 (1.확정분자납) 선택

6. 세무대리인인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조회 시 사업장이 여러 개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니 하단에 국세계좌 및 가상 계좌가 보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고지세액을 하나의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나요?

- ☞ 아닙니다.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는 사업장마다 각각 부여되므로 각각의 사업장의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각각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사업장이 여러 개 조회 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선택하면 해당 사업장의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가 표시됩니다.

7. 부가가치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은 ?

- ☞ 신용카드 국세납부는 흠택스 및 인터넷으로 사이트(giro.or.kr)¹⁾ 또는 은행 CD/ATM기²⁾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 1)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 납부대행수수료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 자세한 문의사항은 금융결제원 상담센터 1577-5500
 - 2) 은행 CD/ATM기(우리은행 제외)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 카드(신용, 체크)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세자 부담



~~~~~  
이 책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 도움을 드리기위해 제작된 것으로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관련 세법령 및  
해석사례 등의 원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2021.1기 확정)

발행일자: 2021년 6월

발행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본 책자를 복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044-204-3214)로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